

第282回國會
(臨時會)

行政安全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15日(水)

場 所 行政安全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방재청 소관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4.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5.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6.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세기본법안
16.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특례제한법안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8.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건물 재산세 확대 경감에 관한 청원
29. 소녀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30. 지방세 환급에 관한 청원

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8.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39.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0.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1.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2.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3.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4.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5.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다. 소방방재청 소관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김소남·김우남·김태환·박대해·신상진·안홍준·유재중·이경재·이명수·이정선·이철우·이한성·정갑윤 의원 발의) 7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옥이·김재윤·손범규·신학용·안효대·윤석용·이달곤·이범관·이정선·이정현·정두언·정병국·차명진·현기환·홍장표 의원 발의) 7
4.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송민순·강기정·김동철·이시중·송훈석·이진삼·전혜숙·이화수·이계진·김을동·강창일·김재윤·박기춘·김희철·원희룡·신학용·우윤근·조경태·이성현·최인기 의원 발의) 7
5.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성수·김소남·임두성·이진삼·김성곤·이윤석·이한성·김성순·이춘석·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7
6.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성수·원혜영·정진섭·손범규·신상진·박상돈·나성린·강창일·배은희 의원 발의) 8

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김진표 · 이해봉 · 정하균 · 김재균 · 양정례 · 박상돈 · 김동성 · 조배숙 · 강기정 · 장광근 · 김성곤 · 김종률 · 박기춘 · 송민순 · 김희철 · 최문순 · 양승조 · 조전혁 · 김성수 · 우제창 · 백원우 · 오제세 · 이진삼 · 전해숙 · 전병헌 · 김동철 · 안상수 · 류근찬 · 심재철 · 신상진 · 강성중 · 최인기 · 서종표 · 정장선 · 우윤근 · 전현희 의원 발의) · 11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 · 양정례 · 유정현 · 구본철 · 유성엽 · 이철우 · 안상수 · 김정훈 · 이해봉 · 이인기 · 김충조 · 이한성 · 안홍준 · 현기환 · 황우여 · 백성운 · 박보환 · 김영우 · 원희목 · 정하균 · 이화수 · 정해걸 · 김동성 의원 발의) · 11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안경률 · 이애주 · 송민순 · 이철우 · 박영아 · 정두언 · 김세연 · 임해규 · 이상민 · 정영희 · 김춘진 · 정갑윤 · 유정현 의원 발의) · 11
10.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 · 구본철 · 신상진 · 김영우 · 이한성 · 황영철 · 이경재 · 송훈석 · 박상은 · 손범규 · 김성수 · 이계진 의원 발의) · 11
11.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소남 · 정해걸 · 손범규 · 윤석용 · 박보환 · 김성수 · 문국현 · 윤두환 · 김무성 의원 발의) · 11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유성엽 · 김영록 · 김재윤 · 안민석 · 이강래 · 우윤근 · 이용섭 · 강창일 · 박은수 의원 발의) · 14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황진하 · 안경률 · 장제원 · 이범래 · 정갑윤 · 원유철 · 이인기 · 김소남 · 김성조 · 유정현 의원 발의) · 14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5. 지방세기본법안(정부 제출) · 14
16.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17. 지방세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 · 14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 · 임동규 · 김태원 · 김정권 · 김광립 · 이성현 · 정양석 · 원희목 · 강석호 · 윤석용 · 박보환 · 주광덕 · 이한성 · 윤영 · 안효대 · 박중희 의원 발의) · 21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고승덕 · 이한성 · 송민순 · 손범규 · 안경률 · 임영호 · 주성영 · 박민식 · 김소남 · 차명진 · 김성수 · 주호영 · 이해봉 · 이정선 · 김태원 의원 발의) · 21
2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2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영애 의원 발의) · 21
2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임영호 · 박상돈 · 류근찬 · 이영애 · 김성수 · 이상민 · 박선영 · 양승조 · 김영진 · 김영록 · 김용구 · 강석호 의원 발의) · 21
2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이시중 · 양승조 · 주승용 · 우윤근 · 송광호 · 변재일 · 홍재형 · 박상돈 · 박순자 · 노영민 의원 발의) · 21
25.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김재균 · 김성순 · 김효석 · 이용섭 · 홍재형 · 천정배 · 김창수 · 김종률 · 허범도 · 이상민 · 최철국 · 장광근 · 임동규 · 허천 · 김태환 의원 발의) · 25
2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황진하 · 안경률 · 장제원 · 이범래 · 정갑윤 · 원유철 · 이인기 · 김소남 · 김성조 · 유정현 의원 발의) · 25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9
28.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건물 재산세 확대 경감에 관한 청원(김충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0
29. 소녀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김금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0

30. 지방세 환급에 관한 청원(주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32.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7.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8.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39.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동철 · 김희철 · 김우남 · 오 제세 · 유선호 · 김재윤 · 우제창 · 박기춘 · 강기정 · 김충조 · 전해숙 · 안민석 의원 발의)	34
40.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 · 강성천 · 김동성 · 김세원 · 김 태원 · 김충조 · 나경원 · 박성운 · 박지원 · 박종희 · 박준선 · 안상수 · 유성엽 · 이진삼 · 이해봉 · 이 화수 · 정갑윤 · 정해걸 · 허태열 의원 발의)	34
41.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신지호 · 나성린 · 이명규 · 신 성범 · 정갑윤 · 정해걸 · 김정권 · 김재경 · 김성조 · 안홍준 · 윤영 의원 발의)	34
42.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배영식 · 김효석 · 이화수 · 강 성천 · 안경률 · 황영철 · 김태원 · 강석호 · 이명수 · 안상수 · 백성운 · 김성수 · 정진섭 · 정영희 · 이 범관 · 진성호 · 권영진 · 신상진 · 홍일표 의원 발의)	34
43.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나성린 · 손범규 · 임두성 · 강 석호 · 장제원 · 이종혁 · 이학재 · 구상찬 · 김선동 · 김성조 의원 발의)	34
44.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 · 원희룡 · 임동규 · 유기준 · 윤 석용 · 홍정욱 · 이해봉 · 권영진 · 백성운 · 안상수 · 정병국 의원 발의)	34
45.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 · 허범도 · 한선교 · 김충조 · 이 한성 · 김성곤 · 주광덕 · 안상수 · 이명수 · 임동규 · 김충환 · 박준선 의원 발의)	34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이한성 · 홍장표 · 김 충환 · 구본철 · 양정례 · 안홍준 · 강석호 · 정양석 · 김소남 · 현경병 · 유기준 · 배영식 · 허원제 · 원 희목 · 장광근 · 신상진 · 송영선 · 진성호 · 이화수 · 박보환 · 백성운 · 김동성 · 나경원 · 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45
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운환 의원 대표발의)(성운환 · 강석호 · 김효재 · 백 성운 · 안상수 · 유기준 · 유재중 · 이인기 · 이한성 · 장광근 · 정해걸 · 주광덕 · 최구식 · 한선교 의 원 발의)(계속)	45
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신지호 · 조문환 · 이 한성 · 정영희 · 안홍준 · 임동규 · 구본철 · 고승덕 · 김학송 · 홍일표 · 현경병 · 이해봉 · 백성운 의 원 발의)(계속)	45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 · 신지호 · 김세연 · 이 인기 · 백성운 · 강석호 · 이해봉 · 허태열 · 이성현 · 김태원 의원 발의)(계속)	45
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 · 안상수 · 정영희 · 안 홍준 · 백성운 · 김무성 · 신영수 · 유재중 · 서상기 · 안경률 의원 발의)(계속)	45
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태원 · 이범래 · 장 제원 · 원유철 · 현경병 · 정갑윤 · 안경률 · 백성운 · 이은재 · 이인기 · 김소남 · 조진형 · 유정현 · 김 성조 · 신지호 의원 발의)(계속)	46
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 · 이범래 · 이은재 · 정 갑윤 · 원유철 · 김소남 · 김태원 · 유정현 · 박준선 · 나성린 · 조전혁 · 김동성 · 이명수 의원 발의)	

- (계속) 45
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강기정·김상희·김재운·노영민·문학진·박병석·박선숙·백재현·안민석·우윤근·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미경·이종걸·전병헌·전혜숙·조정식·최규성·최영희·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45
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운·문학진·신낙균·이윤석·장세환·김우남·이춘석·양승조·김영진·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45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권영길·홍희덕·곽정숙·우제창·문학진·강기정·최문순·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46

(10시22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경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진형 위원장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경찰청 소관

다. 소방방재청 소관

○**위원장대리 권경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희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희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금 2조 1989억 1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47억 5300만 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법령상 사무 총조사 2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합계 2조 2156억 54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2조 2151억 5400만 원을 순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동 사업을 전액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상품권의 복제 또는 할인이나 근로 대가의 부정 수급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둘째, 2009년도 지방교부금 규모는 당초 본예산과 같이 유지하되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조정은 사후적으로 정산 반영토록 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 인하, 국고 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아울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것,

셋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선정된 노선이 시군별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행 50%인 국고 보조율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소방방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희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 지방의 현실을 반영

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데 역점을 두고,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등등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걸 제시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사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오늘 우리 행정안전부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 보완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오늘 저희 경찰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대하여는 성심껏 경찰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전·의경 숙영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의경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도 높은 내부 기강 확립을 통해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소방방재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오늘 2009년도 제1회 소방방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음은 예정된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께서는……

○신지호 위원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말씀하세요, 신지호 위원!

○신지호 위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54개 법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46번부터 55번까지 잡혀 있는 집시법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이미 2월 임시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이 되면 이제 법안소위로 회부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과정)를 남겨 두고 있고, 그밖의 나머지 법률은, 법안은 오늘 새롭게 올라운

법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법에 법안 상정하는 순서를 잡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해서 보자면, 지난번 2월 임시국회 때 상정이 되었지만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이 없었던 관계로 법안 소위로의 회부가 보류된 집시법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오늘 새롭게 올라온 법안들을 하는 게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회의 진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알아 봤더니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는 아니고 통상 법안 상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의 건제순(建制順)으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이 건제순으로 상정 심의를 한다, 이렇게…… 그게 관례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례에 기계적으로 따를 것 같으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법을 먼저 심의하게 되고 지난번에 이미 다 상정까지 끝난 법에 대해서는 맨 뒤로 미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법안을 사실상 심의하다 보면 뒤에 배치된 법안은 그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비밀비해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관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상정은 되었지만 대체토론만을 못 한 집시법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신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관례와 원칙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38번 경찰관직무집행법 보면, 이게 정부안인데, 이게 사실상 경찰청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이것 상정하기 전에 그 문제는 따로 의논하겠습니다. 일단 퇴장해 주세요, 두 분은.

자리 정돈하고 나서 논의합시다.

(장내 정리)

지금 신지호 위원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유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일단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세이브를 했던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에게 본 위원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일정을 제대로, 순리대로, 원칙대로, 관례대로 짜도록 경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신지호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이 경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직제순으로 한 그런 부분도 일단 감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일단 상정해 놓고 대체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하고 합해져서 경찰청 소관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정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나하나 원리대로, 원칙대로 따져서 순리대로 순서를 정해 주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신지호 위원님, 그러니까 양해하십시오. 예?

○신지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홍장표·김소남·김우남·김태환·박대해·신상진·안홍준·유재중·이경재·이명수·이정선·이철우·이한성·정갑윤 의원 발의)

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옥이·김재윤·손범규·신학용·안효대·윤석용·이달곤·이범관·이정선·이정현·정두언·정병국·차명진·현기환·홍장표 의원 발의)

4.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송민순·강기정·김동철·이시중·송훈석·이진삼·전혜숙·이화수·이계진·김을동·강창일·김재윤·박기춘·김희철·원희룡·신학용·우윤근·조경태·이성현·최인기 의원 발의)

5.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성수·김소남·임두

성·이진삼·김성곤·이윤석·이한성·김성순·이춘석·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6.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김성수·원혜영·정진섭·손범규·신상진·박상돈·나성린·강창일·배은희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전부 54건인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안별로 묶어서 상정을 하고, 대신에 안건 심의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장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 전체를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 있으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해서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한절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경일은 그 주요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일부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국경일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개정안은 국경일 간 형평성 유지와 존엄성 확보 또 교육적 의미 등에서 볼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휴일 수 과다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시각도 있어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되, 주요 외국의 예에 따라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공휴일은 국민의 기본권인 휴식권과 관계된 주

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아울러 대체 휴일제의 경우 휴일 수 증가가 아닌 정해진 휴일 수를 지켜줌으로써 공휴일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 강창일 의원, 원유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신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 강창일 의원의 안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 개념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은 기본적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낙후된 소규모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유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 없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직접 개발도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충조 위원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충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조 위원 이게 국경일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면서도 휴무일로 하지 않은 것을 휴무일로 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것 곤란하다.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에 '외국에 비해서 휴일 수가 많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외국에 비해서 휴일 수가 많고,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것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고려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근로시간은 야간근무라든지 잔업근무가 많은 직장이 많기 때문에 시간으로서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 휴일 수로서 계산할 때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나라보다 결코 적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참고로 말이지요 이것이 휴일 수로만 자꾸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1년 전체에서 근로하는 시간 또는 주중·월중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싶은데……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380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비교해서 선진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몇 개 나라를 들어 보면, 미국의 경우는 1804시간, 노르웨이 1407시간, 프랑스 156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도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김충조 위원** 그리고 헛수가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2004년서부터 2005년 이 사이의 통계, 그러니까 한 3~4년 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ILO가 통계를 내서 42개국의 노동시간을 비교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근로자의 경우 50%에 가까운 49.5%가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 근무시간을 오버하는, 넘기는, 너무 과도하게 근로하는 이런 것으로 봐서 41개국 가운데서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2위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진 외국 몇 개 나라와 비교해 보면 스위스 19.2%, 미국 18.1%, 일본 17.7%,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데는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

요, 프랑스 14.7%, 핀란드 9.7%, 노르웨이 5.3% 등등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외국과의 대비 또 이러한 통계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단순히 휴무일 수가 많다 이것만 가지고 국경일을 휴무일로 하는 데 반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제시한 이 통계를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지적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위기니까 이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할 때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하고 국가 간의 발전 단계를 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소위 심사 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홍장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 윤상현 의원안은 너무 비약적인 것 같지만 홍장표 의원이 낸 제헌절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는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헌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영어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한글을 만들어서 제정·공포한 날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이은재 위원님은 찬성……

○**李恩宰 委員**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또……

예,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 위원** 홍장표 의원이 발의한 안과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과, 그 내용을 보면 대략 취지가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통 국경일이 공휴일에, 1년에 대개 한 2개의 국경일이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가 매년 있지요, 통상적으로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홍장표 의원은 국경일을 한 2개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대체적으로 중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은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헌절과 한글날을 국경일로 다시 재지정하는 것도 이러한 중복되는 부분과의, 공휴일 수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가 돼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범래 위원님!

○이범래 위원 단순히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다른 나라의 노동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 여쭙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선진국들은 보면 여름휴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일수나 이런 개념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여름휴가를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휴일을 줘서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통계는 공공 부분의 통계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업 부분의 노동 생산성 문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하고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이범래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민간기업에서 휴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게 한국은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이범래 위원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법률로 해서 일반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반드시 지키게끔 돼 있는 나라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개정법을 보면 국경일을 그냥 당연히 민간기업도 휴일로 만들게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게 의문이 됩니다. 여태까지의 체제처럼 국가가 공휴일로 정한 것과 민간기업이 그것을 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민간기업, 너희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이범래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체계를, 현재는 공휴일과 관련된, 국경일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휴일이라든지, 노동 생산성과 관련해서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래 위원 예,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것은 행안부 문제일 뿐만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노동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갑윤 위원님!

○鄭甲潤 委員 정갑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윤상현 의원 법안을 보면 실제 특히 올해의 경우에 국경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여망하고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기존 기업체에서는 임단협 체결할 때, 중복되면 그다음 날 놀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파악된 바로.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얘기고, 기업의 임단협에서 할 게 아니라 법제화하자는 윤상현 의원의 안이고, 단순히 중복되는 부분의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홍장표 의원안은 사실 그러한 부분도 어떤 측면에 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제헌절이라든가 한글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봐서는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공휴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섯 분의 위원님이 그다음에 나오는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하고 같이 의견을 말씀해 주

셨는데, 윤상현 의원님 대표발의 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2건을 같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안까지 다 합해서 토론 종결을 할까요?

그러면 2건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법래 위원님!

○**이법래 위원** 장관님, 지금 보면 도서개발촉진법 중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이 법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제주도특별법상 일반 도서량은 전혀 별개로 지금 제주도가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주도 출신의 의원님들이 제주도특별법이 통과 안 되는 것을 전제하에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제주도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벽지·도서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에 이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드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서개발촉진법에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들 법안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진표·이해봉·정하균·김재균·양정례·박상돈·김동성·조배숙·강기정·장광근·김성곤·김종률·박기춘·송민순·김희철·최문순·양승조·조전혁·김성수·우제창·백원우·오제세·이진삼·전혜숙·전병현·김동철·안상수·류근찬·심재철·신상진·강성중·최인기·서종표·정장선·우윤근·전현희 의원 발의)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공성진·양정례·유정현·구본철·유성엽·이철우·안상수·김정훈·이해봉·이인기·김충조·이한성·안홍준·현기환·황우여·백성운·박보환·김영우·원희목·정하균·이화수·정해걸·김동성 의

원 발의)

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안경률·이애주·송민순·이철우·박영아·정두언·김세연·임해규·이상민·정영희·김춘진·정갑윤·유정현 의원 발의)

10.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허천·구본철·신상진·김영우·이한성·황영철·이경재·송훈석·박상은·손범규·김성수·이계진 의원 발의)

11.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김소남·정해걸·손범규·윤석용·박보환·김성수·문국현·윤두환·김무성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원, 공성진 의원, 이군현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성진 의원님과 문희상 의원님 안은 베트남전쟁 등 해외에 파병되어 우방국 정부의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자들에게 국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서훈체계와의 부합 여부, 무공훈장 외 다른 외국 훈장 수훈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자료의 부존재 등에 따른 공적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군현 의원안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교원도 근정훈장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 교원은 비록 사립학교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자격·복무, 국내 연수 등에서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등 사실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정훈장의 과다 수여로 인해서 이러한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에 개정안의 내용은 이런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허천 의원님과 임두성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신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천 의원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보조금의 인상 지원을 의무화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통일복권 발행과 접경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사항에 지원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보조금의 인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원활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통일복권 발행과 접경지역 지원기금 설치 규정은 복권 발행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기금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두성 의원 안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바, 민군통합복지센터는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그리고 접경지역 관련 대표발의 한 법안 2건을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위원님!

○**김소남 위원** 상훈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외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제가 확인을…… 100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소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로부터 파병 명령을 받아서 베트남·이라크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인정받은 분들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무공훈장과 달리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전군인 간 형평성 차원에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평소의 국가 영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김소남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무공훈장의 취지는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통 취지를 보고 있고 또 국방부의 의견은 이 무공훈장을 주려면 군 지휘관이 전장에서 전공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휘권의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서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지휘하는 전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전공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소남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우방국의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보훈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외국 무공훈장 서훈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여기에 외국에서 받은 사람 중에는 전장에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평화유지 활동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다시 조율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소남 위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범래 위원!

○**이범래 위원** 뭐 하나 여쭙 보려고요.

우리나라 훈장이 외국의 훈장에 비해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은 상당히 많이 남발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훈장을 주는 것이 외국에 비해서 좀 많이 주는 건지, 그런 조사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훈·포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

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분야별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추세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일부 훈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훈·포장에 대해서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훈·포장을 분야별로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역별로나 업종별로 그리고 직능별로. 그러나 이것의 어느 정도의 품위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우방국의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국내의 무공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김태원 위원** 제외 대상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충조 위원님!

○**김충조 위원** 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상훈법에 대해서 말이지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 근정훈장을 수여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일 이분들이 서훈을 받게 된다 할 경우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지금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평생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법에 보면 아직까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대상이 늘어나 가지고 직원들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집니다. 그렇게 되면 훈·포장의 가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충조 위원** 이분들을 포함시키면 직원들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학교 및 교원에 관한 지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향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김충조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800여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직접 지금 이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어도 관련 청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관련 청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립대학교 군사교육 교관들 이분들의 근무기간 8년여 기간을 제외시켜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봤는데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법 개정이 여러 군데에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조 위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위국·위민·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한 예우를 해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교육학술 분야 전체를 통틀어서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상훈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분야로 넣지 않아도 이쪽에서 많은 업적을 내신 분들은 훈·포장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유성엽·김영록·김재윤·안민석·이강래·우윤근·이용섭·강창일·박은수 의원 발의)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황진하·안경률·장제원·이범래·정갑윤·원유철·이인기·김소남·김성조·유정현 의원 발의)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지방세기본법안(정부 제출)

16.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지방세특례제한법안(정부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12항, 13항도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권경석** 해당되는 정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관·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재난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성격이 상이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분법하여 체계화·전문화함으로써 지방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조세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안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은 현행 지방세법

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재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세율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세수가 아주 적은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안은 현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기관을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일반은행 등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재정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권경석 의원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재정보고서의 분석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의결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동 위원회를 폐지해서 불필요한 조직·인력을 감축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안은 사업예산제도의 분류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난복구사업 등의 경우에도 계속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재난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채무부담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다년도에 걸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비의 총액을 계속비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계속비 예산편성 의무 규정은 선연적·권고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생략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물량의 과대신고·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재해복구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세특별제한법안,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은 현행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분야별·기능별로 나누어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별제한법 등으로 분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해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과 실무자가 알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률을 구현하기 위한 분법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번 분법안에서는 기존 세법체계를 개편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중심이 된 반면,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또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각각 법률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안은 현행 지방세법 제1장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기존에 국

세기본법 등을 준용하고 있던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한편,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 후 신고대상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제정안은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체납액수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에 비하여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체납액 기준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1장(총칙)과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하고 제2장~제4장의 세목분야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에 대한 통합법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사·중복 세목을 통폐합해서 현행 16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세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계층 간 세목 및 세율의 조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선박·차량 등의 취득 및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하고,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정비하였고,

둘째, 등록세 중 취득행위와 무관한 부분과 면허·허가 등 권리설정 행위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폐합하고, 해당 지역의 특정자원 및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로,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는 등 그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정리하는 한편,

셋째, 현재 징수유예 상태인 농업소득세와, 연간 징수액 424억으로 총 지방세수의 약 0.097% 수준으로 재원 조달 효과가 미흡한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여 농업·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 따라 기존 시·도세였던 부분이 시·군세로 변경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 일부 세목 및 세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전제로 통합 취득세 및 레저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에 제출된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임을 감안할 때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서 개정안의 시행일 및 세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은 현행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독립시킨 것으로서, 그동안 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감면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과세·감면규정 정비,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 지방세 감면규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제정안은 기존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하면서 최근 2년 내에 신설된 감면과 감면대상이 취약하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존치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단체 등에서 과세전환 및 감면존치를 구별하는 기준이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전환을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세전환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면존치 대상에 대해서도 감면현황과 효과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제정안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형평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국가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선심성 감면의 남발,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감면의 양극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교부세의 보전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면율·감면기한 등 감면조례 제정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 충분한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감면조례허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회 아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법안 상정은 선 입법안 선 상정 원칙을 지난번에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되, 다만 긴급한 현안 문제로서 사전에 협의가 된 법안이라든지 기타 이미 제출된 법안과 관련된 법안일 경우에는 통합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등등을 감안해서 상정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 제정법안이 2개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요런 법안들은 심도 깊은 심의도 심의고, 공청회 등등 필요성이 있는 이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냥 끼워 넣고 미리 심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선 입법안 선 상정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러면 우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항서부터 14항까지 3건입니다.

○**강기정 위원**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회 운영은 제법 됩니다.

○강기정 위원 2005년인가요? 아니, 2005년자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교수, 회계사, 민간 전문가들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처음 구성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2005년에 분석하는 것은 처음 도입됐습니다.

○강기정 위원 분석은 처음 이때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 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답니다.

○강기정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분석해서……

이때 보니까 2005년 12월자 신문인데요, 아무튼 교수나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전국의 250개 지자체의 재정운영 실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언론도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 권경석 의원님 대표발의안이나 정부안에 보면 이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그리고 폐지하고 지금 법에는 이런 기능을 어디서 대신하지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이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어디지요? 훈령인가요? “행정안전부 훈령 10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폐지하려고 하는 진단위원회는 법 56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폐지해서 그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훈령에 근거해서 진단을 하겠다,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 위원회…… 사실 그리고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도 많고요, 두 번째로 훈령에 있는 위원회를 가동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기정 위원 저는 법 사항을 그렇게 훈령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 부분은 좀……

○강기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05년 것만 지금 언론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2005년에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 거란 말입니다. 언론도 관심 갖고 지자체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긴장도 하고, 지방재정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물론 형식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법 56조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거조항을 두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번 추경과정, 기재부하고 행안부 고민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한쪽은 돈을 쥐야 될 곳이고 한쪽은 써야 될 곳인데 행안부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추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걸 갖다 들이밀면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정부의 각 부처를, 이런 데 오히려 유효한 위원회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고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까만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사실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지역의 민간영역, 또 주민, 그다음에 언론, 이걸 관심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오히려 법이 저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민간인들이 좀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은 거의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국장이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기정 위원 그러시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구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이 조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국장 정헌울 지방재정세제국장 정헌울입니다.

재정분석·진단위원회는 저희들이 재정분석·진단제도를 도입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정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심의를 해서 그것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분석 자치단체 중에서 지표가 극히 안 좋게 나온 자치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재

정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이런 두 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5년부터 여덟 번 했나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지방재정세제국장 정현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리고 위원님, 이 위원회 말고도 저희 해당 국에서 지방재정을 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위기고 해서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해 놓은 것을 한번 심의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입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제가 재정분석 및 공개, 법 55조도 보고 있고 56조도 보고 있고요. 시행령에 지자체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안 있지요? 시행령 64조…… 이게 시행령인가, 법인가요? 시행령 64조,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사항 해 가지고 열세 가지를 지자체장은 재정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오히려 저는 이런 걸 훈령으로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 분야의 분석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분석한 걸 보고하도록, 이런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공시제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재정운용법이나 행·재정 운용한 결과가 당연히 저희들 공시제도만 따로 하는 홈페이지 거기에 다 떠오르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석 평가는 결과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신중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일곱 번 분석했던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조 위원님.

○김충조 위원 정부 제출 지방재정법 개정안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럴 때에 선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 맞는 얘기라고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부수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예컨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에 그 물량이나 액수 이런 것들을 어떤 제한을 가한다, 이런 생각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10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죽 이때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긴급 재난 시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죽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재량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 승인을 합니다.

○김충조 위원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액수를 낮추든지 다른 조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14항까지입니까?

○위원장대리 권경석 17항까지……

○장제원 위원 17항까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좀……

○위원장대리 권경석 예,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나와 가지고 갑자기 받아보니까 좀…… 어차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장관님 생각을 좀 여쭙 보려고 그러합니다.

먼저 검토보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허가제 폐지'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보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논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반대했던 주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감면해 주

는 그것을 개정을 못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교부금 문제도 힘들고 지방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안전부장관의 어떤 사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막 선심성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줬을 경우에 또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이게 장관님 고통 분담하자는 것하고 좀 논리적 상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주민들이 물론 사전에 참여해서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넣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선심성·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줄 때 이런 감면 조례를, 감면했을 때 그것이 혹시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느냐……

○장제원 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런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를 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 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두 번째는요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시세에서 구세로 옮겨지고 또 보면 광역시나 특별시의 세수보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정교부금을 하향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게 어떻게 시물레이션이 되는지, 오동호 과장님이 설명을 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법안심사소위 하기 전까지 저한테 샘플링이나 시물레이션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조삼모사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지방세제관 오동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하면서 크게 두 가지 면이 세수 변동은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광역시세고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그런데 통합해 가지고 재산세는 구세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세는 늘어났는데 시본청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교부금을……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을 교부금을 하향하겠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교부금을 하향해서 일단은 세제 개편 시에는 재원 중립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니까 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뭐가 틀린 거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돈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지수를 봤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 것 있고요,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기능이 상당히, 기본 도시계획 말고 실시계획 정도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장제원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니까 이 기능과 재원을 일치시킴으로써……

○장제원 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런 점에서 개선이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것은 시물레이션한 자료를, 한 광역시와 한 자치구 간의 시물레이션한 자료를 좀 법안심사하기 전까지만 저한테 좀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그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한 5, 6000억 정도……

○장제원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소득세 지금 폐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체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지금 농업소득세는 과세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받습니다.

○장제원 위원 거의 지금 주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제대로 원래 받아야 되면 한 47억 정도 나오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50억 정도 받았습니

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아주 미미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존속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에서 어떤 탈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농업소득세를 폐지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세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세금이 없어지니까 유통 과정에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탈세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이세가 더 큰데 탈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지금 농업소득세는 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래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물소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탈세적인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까마는……

○**장제원 위원**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무를 심었다, 그러면 밭떼기로 도매상이 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샀는지를 모르게끔 갖고 와 가지고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게 탈세의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그런데 탈세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세 중단했던 이유도 일단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자체가 굉장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의하거든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대안을 저희들은 일단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일반 소득세에 이 부분을……

○**장제원 위원**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디펜스(defence)할 수 있는 얘기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지금 15항에서부터 17항까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강기정 위원님.

○**강기정 위원** 지방재정법만 하는 줄 알고……

지방세기본법 관련해서 권경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법이 3월 5일에 회부되었는데요. 이렇게 숙성되지 않은 법이 갑자기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문제다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정시키지 않기를 요구했는데 위원장님이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감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법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세를 전환하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 세목 변경도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체토론을 더 길게 하기보다도 신중해야 되고, 특히 공청회가 필요한 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목 체계를 정비하고 더 구체화하는,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럴 때 자치구세 전환을 할 때 서울 시세가 강남구나 강북 이렇게 가면 그 구세로 더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조정되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강남 3구는 재산세를 일부분 서울시 분청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분할해 나눠 주는데 지금 이것이 가면 그 액수가 대단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격차가 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현행 방식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서울 강남 3구에 이것 이……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지금 격차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기정 위원**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었을 때 격차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 오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근 3년 정도에 걸쳐서 해 온

작업입니다. 국세는 체계가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체계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보니까 국세의 논리에 전부 휘말려 가지고 지방재정이 독자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도적으로 우선 이 지방세와 관련된 체계화를 해야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분법을 한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본법으로 만들고 세목 줄어 들고 없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줄이고, 그다음에 특례에 대한 규정들이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좀 지방세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출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이 분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지난 3월 5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마는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하위법령이라든지 지자체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도 이 결정이 나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가 상당히 부담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번에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지방의 사정을 한번 봐주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세법을 분법 체계화하는 데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제17항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또 제시하신 의견 등등을 다 포함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분법이니까 내용상의 별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소관이 바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쇄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물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겠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임동규·김태원·김정권·김광림·이성현·정양석·원희목·강석호·윤석용·박보환·주광덕·이한성·윤영·안효대·박종희 의원 발의)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고승덕·이한성·송민순·손범규·안경률·임영호·주성영·박민식·김소남·차명진·김성수·주호영·이해봉·이정선·김태원 의원 발의)

2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 의원 발의)

2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임영호·박상돈·류근찬·이영애·김성수·이상민·박선영·양승조·김영진·김영록·김용구·강석호 의원 발의)

2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

(이시중·양승조·주승용·우윤근·송광호·변재일·홍재형·박상돈·박순자·노영민 의원 발의)

(11시56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24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분산된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여서 제출하였던 법안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온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천 발견 신고수리의 취소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이명수 의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생략하고요.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의원님과 안상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고, 청사 유지관리비용 등 청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상수 의원안은 청사 면적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사의 면적은 이러한 요소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복지 및 행정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하고 있는 ‘청사 표준면적 산출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은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분산된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안전·민방위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용하는 것으로서 민방위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이명수 의원·이시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온천 개발 절차를 통합·간소화함으로써 온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 개발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온천 자원 관리를 위해 관측·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인바 온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온천 개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획 승인과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미개발 온천으로 인한 환경 문제나 불필요한 규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일부 법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인허가 등 의제 관련 법률의 오류,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에 관한 부분 및 수질검사 주기, 일부 벌칙 오류에 대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안은 온천 정의 규정에 성분 기준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현행 보양온천을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으로 세분화하고 온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이를 통해 온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천의 정의 규정에 성분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은 현재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온천도시의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굴착 허가 대상을 토지 소유자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은 온천 개발자의 온천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시종 의원안은 보양온천을 보양온천지구 또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양온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온천 개발 지역은 온천공 보호구역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있으므로 지구 또는 시설로 지정하는 것 외에 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님.

○**강기정 위원** 온천 관련해서 지금 현행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온천 개발할 때 지금 두 번 정도 한답니다. 그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왜 그렇지요? 이것 사실은 온천 개발이 때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면 좋다, 이런 의견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러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기정 위원** 그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규모가 큰 것은 2개 그대로 한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하신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30만㎡, 그러니까 10만평 이상 되는 것은 2개를 각각 나누어서 한답니다.

○**강기정 위원** 10만 평 이상은 그대로 하고 그 이하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소규모만 하나로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민방위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해 오던 것을 작년 정부 출범하면서 가져온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저희들 지금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지금 민방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소위에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정부입법이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정부하고 이상민 의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놓으셨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정부 제출인데요,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상민 의원님……

○**강기정 위원** 어쨌든 이것을 작년까지 소방방재청이 잘 수행해 오던 것을 작년에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걸 행안부로 다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가져온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가져가겠다, 이런 행정력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이 법 내용은 지금 제가 와 보니까……

○**강기정 위원** 물론 장관님 계실 때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됐던 건 결국 정부조직 개편이 불합리했거나 뭔가 불철저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아닌데, 이렇게 금방 가져왔던 걸 다시 또 되돌리고…… 아무튼 유감인데 장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 과정에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甲潤 委員** 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근본 개념과 의미는 이미 익히 잘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鄭甲潤 委員** 사실 소방방재청이 2004년도에 출범할 때부터 업무를 놓고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함으로써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의 업무가 분산되고 또 지난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그야말로 소방청을 설치하고 민방위 업무는 행안부로 가져가는 걸로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못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하고 해서 무마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또 지금 행정안전부…… 제가 지난 17대 때 계속 주장한 얘기입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의 최근 역사를 보면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 왔는데, 어쩌면 행정안전부로 ‘안전’이 들어간 게…… 제가 17대에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옛날 소위 행정자치부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재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정부안대로 하자면 이게 다시 소방방재청으로 다 넘어가는 게 되는데 만약 그리로 넘어갔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들겠느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고민거리가.

○**鄭甲潤 委員** 그리고 이미 벌써 지금 이 순간에도 3만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을 독립시켜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행정안전부의 이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안전도 관리하지 않는데, 단순한 행정부밖에 아닌데…… 큰 틀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안전업무를 전부 소방청에 다 넘겨주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더구나 국방의 안전 문제는 군사가 따로 있지만 사실 다른 요즘 각종 재해·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총괄하고 특히 지방

자치단체까지 관장해야 되니까, 소방방재청에 넘겨주셔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전에도 권경석 위원님께서 논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보더라도 총괄 조정 업무를, 총리를 보좌하는 큰 기능인데 이것이 청 단위로 내려가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기정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국회 입장에서 보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세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잉여인력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좋은 말 다 써 놓았네요. ‘관련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제가 볼 때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요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라오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나서도 안 따라오는데, 지금 소방업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1항, 32항에 소방방재청장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필요하신 질문이 계시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서부터 24항까지 7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회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 3시에는 청원소위를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3시 전까지 대체토론을 다 끝내야 되는데 또 식사는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죽 상황을 보니까 지금부터 정회하고 1시 반에 다시 속개해서 3시 전에 끝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정을 참고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강정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경석** 지금 입법조사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이용삼 위원이 사임하고 홍재형 위원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 이용삼 위원 대신에 홍재형 위원으로 교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5.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김재균 · 김성순 · 김효석 · 이용섭 · 홍재형 · 천정배 · 김창수 · 김종률 · 허범도 · 이상민 · 최철국 · 장광근 · 임동규 · 허천 · 김태환 의원 발의)

2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황진하 · 안경률 · 장제원 · 이범래 · 정갑윤 · 원유철 · 이인기 · 김소남 · 김성조 · 유정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 법률안은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대체입법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통합 절차와 이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법안은 전체적인 체제 개편에 앞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절차와 관련하여 동 법안에서는 통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통추위 설치권자 및 청구권자, 청구절차,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의 기능, 통합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등 공인인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동 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직 인력을 감축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恩宰 委員** 지금 현재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은 그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나오는 법안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장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의원입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장기안을 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다루고, 지금 제안된 이 법률안은 자율적으

로 행안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좀 가속화시키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의 제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과 자율 통합에 관한 법은 내용면에서 첫 단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차별성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리고 행정부 혹은 정부의 지금 입장은 내년 선거 전에라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합의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지방 주민의 합의가 용이하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이범래 위원님.

○이범래 위원 노영민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두지 않고 지금 만든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반드시 결론을 도출한다고 볼 수 없을 때, 그렇게 예상한다고 할 때 이 기초단체 간의 자율적인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지금 정부로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온 지역은 좀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을 하더라도 여기는 통합 비용만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몇 가지 말씀을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허태열 위원님께서 저에게 행정부에서 조기에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행정안전위에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노영민 의원님 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통합 위원회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되는 주요한 이유는 절대다수

의 주민을 가진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고, 주민들은 적극성을 또 보이는데 거기 계신 단체장님이라든지 몇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좀 행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바람이고요.

두 번째 바람은, 두 번째 바람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생각은, 만일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면 지금 이범래 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유인을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범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될 텐데 이 통합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저희들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음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개편방안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까지, 올 9월까지 활동시한을 명기해 뒀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해 주되, 지금 뭐 특별히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 논의는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몇 개 안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그것을 통합,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통합 쪽으로 몰고 가자는 게 그 컨센서스 빌딩(consensus building)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행안위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을 오히려 보완 또는 촉진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면 오히려 그쪽에 좀 더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노영민 의원 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장을 해야 될 게 있다, 어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로세스를 간명하게 만들어서 뭘 할 것이냐 등등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좀,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기정 위원 지금 이 법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광역과 기초의 통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특위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지역발전 문제를 볼 때 대도시 내에 불균형이 아주 심하고요, 대도시 구간의 조금 구가 커졌으면 합니다. 다만 구에서도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민주주의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임명제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이미 나와 있는 시군 간의 통합도 좀 용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것은 특위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하고 꽤를 같이 합니다. 기초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통합이 돼야 다른 논의도 진행되니까요.

○강기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통합의 요구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한번 몇 군데 사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이 뭐 다 밝혀져 있습니다. 위원님께……

○강기정 위원 예를 들면 광양 그다음에 그 쪽 어디지요, 여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저희들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래서 도를 넘어선 경우에 지자체 간 통합……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것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삼가려고 합니다.

○강기정 위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희 행안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방향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마는 한 5년~10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주 단순한 것은 통합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효율성 부분을 그 주민에게 돌아가게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두 번째 교부세의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혹은 특교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행안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노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법 말고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뭐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초벌 정도는……

○강기정 위원 아니, 발의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부에서 하기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조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충조 위원님.

○김충조 위원 장관께서 그동안에 기초자치단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기초 반영에 대해서는……

○김충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도·농 통합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때 도·농 통합 문제가 제기되면 모범적인 사례로 여수반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충조 위원 그때 당시,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단을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50여명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거의 예외 없이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이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것 아닌가 또 선거구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대단히 외람되고, 제가 건방지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유일하게 제가 혼자 여수반도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통합에 앞장서는 바람에 많은 통합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필요 없는 논쟁도 많이 하고 싸움질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물리력으로까지 대처하는 단계까지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이지요, 그때도 수차례 걸친 기도 끝에 통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수반도는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 지방자치단체였는데 그때 당시 내무부가 경직된 자세를 갖고 있어 가지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만 통합한다, 아니, 2개. 2개 이상이 아니고 2개로 국한시켰어요. 그래 놓고 ‘2개는 시와 시 통합도 안 되고, 군과 군 통합도 안 된다. 둘은 반드시 시군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양보를 안 해요, 처음에 한 1~2년 동안.

그래서 제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2개 이상 지역, 그 원칙대로만 하면 여수반도는 통합이 안 되지요, 그 원칙을 당시 내무부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면. 그런데 끈질기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2개 이상이라도 통합을 시켜야, 예를 들어서 여수반도하고 무안반도 이 2개를 내가 중점적으로 거론

해 가지고 결국 여수반도 세 군데는 나중에 내무부에서 그 원칙을 완화시켜져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때는 주민투표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간 이 방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 달라 해서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돼서 아마 요즘 지방행정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수가 모델 케이스로 운위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수시 쪽에는, 저는 여수시 쪽 출신이었습니다. 여수시 쪽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군 쪽에서 아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깡그리 반대예요. 거기가 농촌지역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여될 수 있는, 그때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농지역에 도·농, 여천지역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몰아서 혜택을 보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교부금을 지원한다·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통합이 되면 현존하고 있는 관공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무게로 따지면 제일차적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 반대하는 쪽에서 ‘청사를 우리 쪽으로 달라.’ 그래 가지고 출신 국회의원, 출신도의원, 출신 단체장 그리고 또 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통합 뒤에 농지역으로 관공서가 갔는데, 요즘 도심지역의 아주 몰상식한 기초의원들이 일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옛날로 환원시켜야 된다, 여수시 쪽 인구가 제일 많았으니까 청사를 다시 여수시 쪽으로, 과거 여수시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명날인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사를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 또 청사가 결정되면 청사를 현재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반드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도심지역 쇠락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폭넓게 사랑해서 인센티브 부여할 때 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청사를 특정 지역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 청사가 옮겨가는 경우 다시 청사를 새로 짓는

다, 건물. 이런 문제가 부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연수로 기간이. 그러면 그 효력 문제도 법령상으로 명백히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타 위원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하여튼 3여 통합에 관해서 김충조 위원님 활약상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향만 조기에 좀 실시해라, 이런 결정만 오늘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제시한 내용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현행 지자체법에도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첫째는 인센티브인데 아까 장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부분을 환원한다.’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교부세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 하나가 구체적인……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규모가 커지면 행정적인 특례도 좀 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렇지요. 그리고 ‘통합에 따른 국가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어느 정도 부담을……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리고 ‘도의 권한 이양한다.’ 대충 한 서너 가지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그것도 심도 깊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전제조건이 아까 국회의원선거구를 분할하거나 변동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그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상충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행정체제 개편 방향 중의 제일 큰 고려사항은 생활권 단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현행 생활권 단위로 통합한다.’ 하는 그 범위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또 김충조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청사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또 그것과 인센티브를 연결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중점 심의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매우 오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통합 절차를 좀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 이후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한데 통합이 어느 정도 한쪽에서 오랫동안 거론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안전부도 직접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투표까지 가는 절차가 좀 간단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 문제가 실질적으로 통합의 여러 조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장대리 권경석** 통합 절차를 좀 간소화하든지 효율화하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위원장대리 권경석** 나중에 법안심사 과정에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2건은 대체토론을 종결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안소위원회 의결은 나중에 성원이 되어야 그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8.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건물 재산세 확대 경감에 관한 청원(김충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9. 소녀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김금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지방세 환급에 관한 청원(주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4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30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께서 소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해서 이를 재직 중 공무원의 범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감액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일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충조 의원이 소개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광호텔 건물 재산세 확대 경감에 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관광호텔 토지분 재산세만 경감하고 있는 현행법을 건물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청원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금래 의원이 소개한 소녀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소녀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어머니이자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소녀의 내재적 역량을 강화시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 청원의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을,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기념일 제정은 국가적으로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소년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의 지적도 있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이 소개한 지방세 환급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기부채납한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매입에 따라 납부한 취득·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06조 및 126조에 근거해서 환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정부 측은 청구인들이 매입한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근거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사회관념상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과세의 명백한 불법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문제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18분)

○**위원장대리 권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3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인데요. 장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서의 보관 의무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 규정 및 이행 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 금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 의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과중한 다중이용업주의 서류 보관 의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해서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권경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충조 위원님!

○김충조 위원 소방시설공사법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뿐이 없습니까, 제재조치가?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입니다.

예, 그뿐입니다.

○김충조 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보고를 해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 무슨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가요? 상습적인 경우가 있을 건데.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상습적’이라는 용어를 넣어 가지고는 들어간 게 없고요, 여기에 포괄돼서 포함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200, 그다음에 유사한 경우에 또 과태료 200……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계속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충조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그때마다 또 똑같은……

○김충조 위원 과태료에서 끝난다?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충조 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형법에서도 형벌을 가할 때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업 정지를 시킨 달지 아니면 영업소 허가 취소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바꾸는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혹시 법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사람들의 이의 신청권도 여기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충조 위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잘못된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빼앗는 것인데, 그거 괜찮은가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지금 청문식으로 해 가지고 이의 신청 권한을 정식으로 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장기 체납,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과태료 불납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충조 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는 것인가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체납이 될 때는 체납 처분 절차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아니, 현행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그런 사항은 지금 이것은 아니고요.

○김충조 위원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충조 위원 그래요? 내가 오해를 한 모양이 구면.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 위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시설 점검은 얼마만큼 합니까?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1년에 1회~2회,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규모가 큰 것은 두 번 합니까?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분기별 1회로 돼 있는데요, 전체 소방 대상물을 놓고 봤을 때는 다중업소하고 일반 대상물하고 겸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2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원 위원 보관 의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금년도의 점검 결과를 다음 점검 결과, 1년 후에 점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금년의 점검 결과를 다음 해에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점검을 한 시점하고, 결과서가 폐기된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1년을 보관…… 지금 2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1년 보관하는 것으로……

○김태원 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1년에 하는 다중이용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태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1년이라는 주기로 뒀을 때, 결과보고서 의무보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는 공백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공백이…… 그러니까 그 발생 시점에서부터, 점검결과를 작성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공백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거 있을 수 있는데요. 연초에 점검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해 연말에나 가까이 돼서 점검했을 경우에, 그 공백이 없어요?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그러니까 다음 점검할 때까지는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요, 매분기 별로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분기별로?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김태원 위원 아까 말씀은 1년에……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전체 대상이 복합되어 있을 때는 1년에 1회~2회 하는데 요, 다중이용업소만 단독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보관기간이 공백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경석 더 질문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진형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회석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석 간사, 조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3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火焰瓶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6분)

○委員長 趙鎭衡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8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존경하는 조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국민 친화적인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로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수고했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표-1>, <표-2>가 있습니다. 법률의 한글화 예시가 있고요, <표-2>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를 어떻

게 했는가의 예시를 해 놓았는데, 세 번째에 나를 ‘비(飛)자’에다가 흩어질 ‘산(散)자’, ‘비산하는’ 이것은 일상적으로 안 쓰는 용어니까 ‘흩날리는’ 이거라든가 ‘개임(改任)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바뀌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휴대하다’를 ‘지나다’로 바꾼다든가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바꾼다든가……

그런데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데 ‘휴대하다’를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다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장관님이 죽 개정 취지를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런 게 혹시라도 있는 것 아닌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법령 개편만 전담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로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에 개선이라고 한 용어들은 다른 법률에서도 아마 그렇게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의 작업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봐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 작업이 지금 국가 경쟁력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하는 작업팀이 하나 있고요, 그것하고 법제처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데 오늘 거기가 안 나왔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제가 물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법안심사소위 때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다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33항에서 38항까지는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할 테니까 인사 없이 그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9.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동철·김희철·김우남·오제세·유선호·김재윤·우제창·박기춘·강기정·김충조·전혜숙·안민석 의원 발의)

40.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강성천·김동성·김세원·김태원·김충조·나경원·박성운·박지원·박종희·박준선·안상수·유성엽·이진삼·이해봉·이화수·정갑윤·정해결·허태열 의원 발의)

41.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신지호·나성린·이명규·신성범·정갑윤·정해결·김정권·김재경·김성조·안홍준·윤영 의원 발의)

42.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배영식·김효석·이화수·강성천·안경률·황영철·김태원·강석호·이명수·안상수·백성운·김성수·정진섭·정영희·이범관·진성호·권영진·신상진·홍일표 의원 발의)

43.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나성린·손범규·임두성·강석호·장제원·이종혁·이학재·구상찬·김선동·김성조 의원 발의)

44.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원희룡·임동규·유기준·윤석용·홍정욱·이해봉·권영진·백성운·안상수·정병국 의원 발의)

45.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허범도·한선교·김충조·이한성·김성곤·주광덕·안상수·이명수·임동규·김충환·박준선 의원 발의)

(14시35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5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황영철 의원, 권경석 의원, 원유철 의원, 이성현 의원, 주광덕 의원, 이인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법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에 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치경찰은 사무가 확정되지 않고 시험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정비 시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의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심검문, 장비사용 등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호조치, 사실확인 등과 같이 경찰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모든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행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비례의 원칙이 개정안 제6항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분사기 또는 최루탄 사용에 관한 근거조항인 제10조의3을 삭제하여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고 있는바, 이는 최루탄이 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화염병 사용에 대한 처벌과 함께 최루탄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것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집회·시위의 관리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도주방지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제10조제4항을 신설해서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장비 이외의 불법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10조제3항에서 경찰장비의 임의개조 등을 통해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장비사용의 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구성요건 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삭제함으로써 경직법상 의무 위반

및 권한남용만으로도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타인의 범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 형법체계에 비추어 과도하게 형벌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미아'의 개념을 '실종아동'으로 변경하는 한편, 실종아동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5년 12월 1일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을 '실종아동 등'으로 규정하면서 실종아동 등의 신고체계 구축, 수색·수사 등 발견을 위한 사항을 경찰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아'의 개념을 '실종아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기존의 미아 외에 정신지체장애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종 장애인의 경우 미발견율이 실종아동보다 높고 14세 미만 아동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능력을 가진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해서 '실종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나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와 제지 및 격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제1항에서는 술에 취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앞서 경고를 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4조제1항은 그 대상이 주로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술 취한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위를 계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경고, 보호조치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는 대상자의 긴급한 상태로 말미암아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의 자유구속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안과 같이 보호조치 대상자에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주취자의 신체의 자유라는 범익과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범익 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해서 공공장소,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경고·제지·격리의 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이 어려운 수준의 주취자의 난동을 제압하고 신속한 질서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6조는 범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주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경고·제지의 순으로 경찰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가까운 범죄 상황에 대한 경찰력 행사에 비해 주취자의 난동에 대한 경찰력 행사를 더욱 강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범죄예방 및 제지를 위한 요건 중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경찰력의 조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발생에 따른 범인 검거보다는 예방과 제지가 더 중요하므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 의할 경우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경우' 판단의 여지가 더욱 확대되어서 범죄행위의 착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경찰관의 판단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현행대로 두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생명·신체에 특별한 손

실을 입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한 보상할 수 없는 바, 경직법 등 경찰관련 법률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을 요구해도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도 민원, 진정 등을 우려해서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손실보상의 근거의 마련을 통해서 적정한 경찰권 행사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경직법상 경찰의 직무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2조(직무의 범위)가 손실보상을 위한 개별적인 수권조항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고, 특히 위험발생 방지에 관한 제5조가 경찰상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개별적인 수권조항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작용을 위한 개별수권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권 발동 여건의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이성현 의원의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불심검문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3조제1항에서는 현행 제3조제1항의 규정 중 ‘수상한 거동’이란 용어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불심검문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심검문의 요건에서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상 ‘기타 주위의 사정’이 불심검문의 독립적인 요건이라기보다는 ‘수상한 거동’과 함께 또는 이를 보조하여 불심검문의 정황판단을 좀 더 구체화해주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제4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정복근무 경찰관의 경우 신분증 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흉장과 명찰을 통해 신분확인이 용이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불심검문 절차의 효율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의2는 그동안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오던 임의적 신원확인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제9조가 유치장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피의자의 유치에 필요한 신체검사 등의 절차는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정하여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에 미흡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해서 피의자의 유치장 유치에 따르는 신체수색 및 안전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유치인의 경우에는 여성경찰관이 신체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 제2조의2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조항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입법 필요성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신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2조의3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자, 즉 경찰책임자에 대하여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경찰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찰책임의 원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권 행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예외적 경찰권 행사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찰권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찰상 손실보상의 근거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불심검문에 관한 경직법 제3조의 규정을 정지·질문, 신원 확인, 소지품 조사, 동행요구 등 그 실시방법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이란 순화

적 용어로 변경하고, 불심검문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며, 흉기 외에 무기 등 위험한 물건도 소지품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 조사대상을 조정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검문근거를 신설하며, 신원확인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심검문에 대한 규정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직법 제3조를 불심검문의 실시방법에 따라 세분화한 것은 경찰관이나 일반국민에게 불심검문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심검문’이란 용어가 신체구속, 의사에 반하는 답변의 강요를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직무질문’으로 순화하는 것도 적절한 입법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들도 법 집행과정에서 꾸준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鎭衡**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상 보고드린 7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하실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 委員** 저는 강창일 의원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 적용범위가 “국가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공무원 또 전투경찰순경에까지 확대한다.” 이었는데, 우선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치경찰제를 지금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법안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경찰관이,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자를 저는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최루제 또는 최루탄 사용을 금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미국에서 경찰관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시

민을 총으로 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폭력을 유발하는 이런 최루제 또는 최루탄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법안으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이 만들어질 때 이 법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委員長 趙鎭衡** 청장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 좀 해 봐 주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제주도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임무도 달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가 지금 확정되지 않고 또 시험단계로 운영되고 있어 경직법에서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법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의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심검문이나 장비사용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보호조치 등과 같이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업무에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 경찰관이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 해가지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의무 위반한 것만 가지고 처벌한다면 단순히 징계사항으로 끝날 것을 전부 경찰관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찰관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은 부동의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비사용 문제도 지금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비는 보통 무전기라든지 교통경찰관이 사용하는 경광등 이런 것도 전부 장비입니다. 사실 비위해성, 위해가 없는 장비인데 이들과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 저희들이 범집행이나 치안활동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지금 법에서도 경찰장비 임의개조 등을 통해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의하고요.

최루제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문화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 또 사용하게 될지, 사실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루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이격을 시키는데 효율적인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신지호 위원 또 질의하시고요.

○**신지호 위원** 얼마 전에 영등포경찰서 근처에서 경찰관이 시위대한테 둘러싸여 갖고 집단구타를 당해서 열 몇 바늘, 스무 바늘인가요? 여기 안면 껌매고 여러 군데 타박상 등 증상을 입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 있어서 시위대 여러 명하고 조우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지난번에 난 사고도 그런 개연성이 현실화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우발적 상황을 그렇게 폭력사태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미약한 것 아닌가?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렇게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자 무차별적으로 달려드는 군중들을, 군중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 장비를 쓴다든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 정규적인 경력과 서로 맞붙어서 할 때는 사실 그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구를 사용하고 이격도 시키고 물대포를 쏜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독립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경찰관 신분이 드러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장비 중에 저희들이 캡사이신(capsaicin)이라고 고춧가루하고 후춧가루가

들어간,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를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이격(離隔)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전자충격기 같은 것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위험하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빈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의 사용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신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그 사용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없고……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내부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할 때 지난번 그런 상황—경찰관이 무전기 뺏기고 얻어터지고 이게 참…… 이번 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국가신인도라든가 국제적 망신이 된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위한 그것은 내부 지침을 제대로 고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더……

김소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소남 위원** 경직법 개정안 중에 황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으로 변경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 보호 대상을 ‘실종아동’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등’을 ‘14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 아동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직법에서도 보호 대상을 ‘실종아동’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종아동 등’으로 확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실 용의가 청장님께서는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김소남 위원** 일선 경찰서와 치안센터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

○**委員長 趙鎭衡** 김소남 위원 의견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참고해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김소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하루 11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치매 노인을 보호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직법 제4조제1항의 ‘정신착란’을 ‘정신질환’으로 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치매 노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치매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실종사건수사 전담팀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김소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경석 위원** 경찰청장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법안심사 할 때 심도 깊게 검토해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예.

○**권경석 위원**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약본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본입니다.

주치자 난동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제4조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가운데 보면 “다만,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는……”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확인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18쪽이 그게 아닌데요?

○**委員長 趙鎭衡** 다른가 보다.

○**권경석 위원** 요약본,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난동을 계속하는 주치자, 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주치자에 대한 경고, 제지, 격리, 이런 3단계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예.

○**권경석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상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나 체포하고 같이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이게 동렬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인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치자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제지하고, 격리하는 보호조치와 정상인이, 정상적 의식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인에 대한 체포나 구금, 구속 활동과 동렬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법안 심의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예는 어떤지, 판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핵심 요지를 아시겠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또는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주치자의 행위를 경고하고, 제지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어떻게 신체적 구속·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이 검토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委員長 趙鎭衡** 김태원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태원 위원** 예.

○**委員長 趙鎭衡** 말씀하시지요.

○**김태원 위원** 강창일 의원 발의안, 경찰관직무

집행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회·시위의 관리를 위한 최루제 사용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제10조의3 중 “불법집회·시위”부분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불법집회·시위”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최루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자는 취지로 검토보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

○김태원 위원 그 부분은……

○委員長 趙鎭衡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김태원 위원 그 불법 시위 부분만을 삭제했을 경우에……

○委員長 趙鎭衡 18페이지.

○김태원 위원 예, 1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委員長 趙鎭衡 18페이지 어디?

○김태원 위원 그러면 불법 집회시위에서도 최루액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의견을 낸 게 맞습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옆에서 담당 입법조사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김태원 위원 청장께서는 만약 불법 집회가 과열되어 가지고 이를 해산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자체시킬 필요가 있을 때 만약에 최루액을 사용 못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강희락 저희들은 그래서 최루액 사용하는 것을 빼는 것에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격리 및 해산 방법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잘못 검토보고가 된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委員長 趙鎭衡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해 보시지요.

강기정 위원 말씀하세요.

○강기정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18쪽 그것은 불법 집회시위 부분에는 최루액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委員長 趙鎭衡 수석전문위원 나와 보세요.

○강기정 위원 어디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를……

○강기정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좀 검토를 하고 계시고……

○委員長 趙鎭衡 입법조사관! 준비하신 분, 직접 얘기해 봐요. 직접 답변해 봐요.

그래, 입법조사관이 직접 답변해 봐요.

○입법조사관 정성희 예, 입법조사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 집회시위에 관해서만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님 안에서 그 입법취지를 반영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강창일 의원안 중에요……

지금 경찰 장비 있지요? 아까 무전기, 개인 소화기—고춧가루 소화기 포함해서, 최루액 포함해서—이런 것은 지금 어디에 규정받고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찰관이 직무 수행할 때……

○경찰청장 강희락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이 직무 수행 시 경찰 장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무전기, 또?

한번 나열을 주 해 보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라든지 교통신호봉이라든지 또는 과학수사 장비 같은 것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화학 뭐요?

○경찰청장 강희락 과학수사 장비.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를 예를 들면, 자꾸 예를 드는데……

소화기는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경찰청장 강희락 ……

○강기정 위원 소화기가, 그러니까 개인 휴대용 소화기를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강기정 위원 그것은 등록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장비인가요, 아닌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규정에, 저희들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그게 일반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무슨 장비요?

○**경찰청장 강희락** 일반 장비.

○**강기정 위원** 일반 장비?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용도는 집회시위 과정에 분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강창일 의원님 안이 나온 것이, 경찰 장비 사용 제한의 조항을 신설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추상적이던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그에 대해서?

○**경찰청장 강희락** ……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안 개정안, 10조에 4항을 신설해서 경찰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장비 이외의 불법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경찰청장 강희락** 먼저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10조에 4항을 신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경찰청장 강희락** 10조에 4항을 신설하면……

○**강기정 위원** 아직 검토 못 해 보셨나요?

○**경찰청장 강희락** 10조에 4항을 신설하게 되면, 이제 최루제가 다중 집회시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희들이……

○**강기정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장비 이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루액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것까지를 사용하지 말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창일 의원안이,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

○**강기정 위원** 잘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것 이따가 검토해 보고 한꺼번에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지호 위원** 그러니까 백골단이…… 이해를 못 하시네. 과거에 속칭 백골단이 시위대가 던진 그 돌을 시위대한테 다시 던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委員長 趙鎭衡** 실무자가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기정 위원** 검토해서 답변하시고……

○**신지호 위원** 우리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李恩宰 委員** 노무현 때 그런 것 아니야!

○**강기정 위원** 다음에 그것은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 중에 지금 불심검문 관련해서 ‘경찰관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는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따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 검토의견 중에 ‘불필요한 중복’ ‘직무 수행의 어려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증표를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어떤 중복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우선 경찰 제복을 입으면 일단 명찰을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찰관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사칭하는 게 1년에 한 건 정도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명찰이나 흉장, 계급장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경찰관이 증명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불심검문의 경우는 오히려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 체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근거가 충분한데 불심검문은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라 더 규정이 있으면 더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직무 수행의 어려움, 불심검문할 때 자기 본인의,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꺼내는 과정에서 신분증 피탈, 또는 범인으로부터 피습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발적인 사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다 알 수 있기 때

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리고 이성헌 의원님 법안 3조의2 신설 조항에서 ‘특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근 경찰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연행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어떤 뜻인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임의동행입니다, 임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도록.

○강기정 위원 임의동행인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예를 들면 매우 지금 바빠요. 그런데 저를 아무튼 불심검문을 통해서 임의동행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업무가 매우 위중한 업무가 있고 바쁜데 그것을 거부할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경찰청장 강희락 지금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인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인근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강희락 그것은 상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는 그런 임의 조항입니다.

○강기정 위원 다음에 주광덕 의원안 중에, 유치장 입감됐을 때 신체 수색 안전 조치인데 지금 현재 경찰서 유치장 내에 보통 피의자 등 연행자가 갓을 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경, 이런 것 지금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실무자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안경 같은 경우를 못 쓰게 한 것 같은데,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가요? 청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여성 속옷, 그런 것도 벗도록 막 이려고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런 주광덕 의원 9조2항 신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위험한 물건인가가 잘 지금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개인의 인권 침해……

○委員長 趙鎭衡 경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해 보세요.

○강기정 위원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경무국장입니다.

○강기정 위원 경무국장님 안경 쓰시나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예, 안경 씁니다.

○강기정 위원 안경 벗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저의 경우에는 반반씩 쓰니까 벗어 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경우에는 불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안경을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취급해서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예, 그런데 안경이라든지 브래지어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안경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브래지어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국과수까지 검증을 해서 사실상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기정 위원 허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委員長 趙鎭衡 사실상은 허용하고 있다?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예, 지난해에 한번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위험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국과수나 외국의 예를 파악해서 사용하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정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개선이 됐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을 착용·소지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치장에 갓을 때?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무기나 이런 것 말고.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들 중에서는 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확연히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자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도록 지니고 있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지금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강창일 의원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장비의 말씀이십니까?

○강기정 위원 예, 경찰 장비.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지금 장비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고

요. 이 규정은 위해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규제를 받지 않는 경찰 장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교통단속 장비라든지 과학수사 장비라든지 또는 차량이나 헬기까지도 저희 장비에 속하는데 이 법령에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위해 장비로 규제하고 있는 것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장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서 버리기 때문에 현장 치안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소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 보세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소화기는요, 지난 번에 소화기 사용이 집회 진압 현장에서 사용됐던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라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앞에 답변한 내용하고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됐어요. 들어가세요.

○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김충조 위원 제가 좀……

○최인기 위원 저도 물어봅시다.

○委員長 趙鎭衡 예, 우선 김충조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요.

○김충조 위원 앞서 위원들이 지적한 이성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데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직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맥락을 함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만일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분증을 위장하는, 사칭하는 이런 범죄가 1년에 한 번꼴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찰청장 강희락 한 번 미만입니다.

○김충조 위원 한 번 정도?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한두 건 정도, 1년에.

○경찰청장 강희락 지금 통계상으로는……

○김충조 위원 아니, 아까 답변에……

○경찰청장 강희락 1.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

계상.

○김충조 위원 1.7건, 2건이구면, 사사오입해서, 2건인데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탈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탈취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충조 위원 누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신분증을 빼내 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김충조 위원 그러니까 ‘보여 주는 과정에서 탈취당할 우려성도 있다.’ 그런 비슷한 요지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그러면 경찰관 신분증을 탈취할 정도의 간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신분증 제시까지도 생략해 버리면 흉장이나 명패 등등 복장, 이런 것을 허위로 불법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걸 착용함으로써 관련 신분을 위장하는, 사칭하는 이런 범죄가 다발할, 증폭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측컨대?

○경찰청장 강희락 그것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처벌 범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충조 위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무게 중심을 거기에 뒤야 된다,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것 한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최인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인기 위원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불심검문에 대해서 개정 의견이 오늘 제안된 법률안 중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 동안 그동안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일단 제지하고 ‘경찰관서로 가자.’ 임의동행을 할 때 우리 경찰들에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임의동행 할 때에는 분명히 같이 가고자 하는 동의서를 좀 받아서 해라.’ 이렇게 여러 번 지침을 내렸어요. 누구 잘 아는 수사국장이나 누구 없는가요?

임의동행 할 때, 불심검문하고 ‘경찰관서로 좀

가지지요.’ 할 때 ‘가겠다.’ 할 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가지고. 그런데 임의동행 해서 동의서를 받은 건수를 통계를 내가 요구를 하니깐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일선 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얘기가 계셨지만 지금 경찰관 그냥 제복만 입었으니까 신분증 제시를 안 하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성함, 이름이 있고 다 그렇겠지만증을 제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경찰서의 무슨 소속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경찰관 제복 입은 사람이 관내 경찰관인지 다른 데 경찰관인지, 도시 같은 경우 여러 경찰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속, 직, 성명을 확인하는 이런 면에서 나는 여러분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 뭐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임의동행할 때 지금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나 못 가겠다.’ 하면 못 가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신분증 제시하고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나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임의동행 시에 여러분들이 그 절차, 그리고 임의동행한 사람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개정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침 같은 것은 명확하니 할 필요가 있어요. “임의동행 통계가 몇 건이냐?” 내가 몇 년 물어봐도 “통계 작성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임의동행이 많이 남용되고 있다, 사실상. 이것 일선 경찰관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 기존 나가 있는 지침을 한번 다 돌이켜 보시고 법 개정, 그것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용할 때, 수사상 운용할 때 그 기록 관리, 이런 것을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참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김유정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유정 위원** 이인기 의원님께서 내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설된 2조의2를 보니까요 이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 권력이 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특히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방법은 법률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일반적 권한 행사의 근거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필요한 조치’라고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진 그런 신설 조항들이 좀 있는데요, 신설된 2조의3을 보니까 ‘제1항과 2항에 의한 조치에 의해서도 위해 요소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러한 자구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라는 그 ‘현존하고’라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다중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법 집행이나 행사에 있어서 저는 정말 구체화된 그런 적시된 범조문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우 포괄적이고 또 구체성을 결여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에 대해서 아까 최인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까라는 그것은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이인기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 3조1항3호를 보면 ‘공공건물, 대중교통기관, 다중운집시설,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장소 등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불심검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동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헌법상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해의 방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방지’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다 더욱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가 저는 심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요?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헌법에 규정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개정안 3조3항을 보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및 범인의 검거, 위해의 방지, 교통의 단속 등을 위해서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정지시켜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내부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불심검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한 수색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지금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 12조3항에 있는 영장주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그리고 최소 침해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에서 조금 치밀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수 있게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주세요. 통계나 모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

라고.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그리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한성·홍장표·김충환·구본철·양정례·안홍준·강석호·정양석·김소남·현경병·유기준·배영식·허원제·원희목·장광근·신상진·송영선·진성호·이화수·박보환·백성운·김동성·나경원 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석호·김효재·백성운·안상수·유기준·유재중·이인기·이한성·장광근·정해걸·주광덕·최구식·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신지호·조문환·이한성·정영희·안홍준·임동규·구본철·고승덕·김학송·홍일표·현경병·이해봉·백성운 의원 발의)(계속)

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신지호·김세연·이인기·백성운·강석호·이해봉·허태열·이성현·김태원 의원 발의)(계속)

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종혁·안상수·정영희·안홍준·백성운·김무성·신영수·유재중·서상기·안경률 의원 발의)(계속)

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태원·이범래·장제원·원유철·현경병·정갑윤·안경률·백성운·이은재·이인기·김소남·조진형·유정현·김성조·신지호 의원 발의)(계속)

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신지호·이범래·이은재·정갑윤·원유철·김소남·김태원·유정현·박준선·나성린·조전혁·김동성·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강기정·김상희·김재윤·노영민·문학진·박병

석·박선숙·백재현·안민석·우윤근·유선호·이강래·이낙연·이미경·이종걸·전병헌·전혜숙·조정식·최규성·최영희·최철국 의원 발의)(계속)

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재윤·문학진·신낙균·이윤석·장세환·김우남·이춘석·양승조·김영진·강기정 의원 발의)(계속)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기갑·권영길·홍희덕·곽정숙·우제창·문학진·강기정·최문순·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15시30분)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55항까지 계속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안 등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3개 안 공통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집회, 또는 폭력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집회 등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5조를 삭제하고, 관련하여 개정안 제6조에 금지통고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헌법 제8조4항에서는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도록 하고 있는바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집단적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규모 군중집회는 그 진행 과정에서 당초에 신고 내용과는 달리 폭력적 시위로 변질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동 조항의 존치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항의 집행에 있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폭력시위 용품의 준비 상황과 참여 인원의 수, 참가단체의 폭력시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판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조항의 폐지보다는 집행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최인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요약본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잘들, 확인 좀 시켜 드려요.

○**최인기 위원** 검토보고서 이것 말고?

○**李恩宰 委員** ‘검토보고’ 다음에 ‘요약’이라고 써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23페이지……

○**최인기 위원** 23페이지?

○**委員長 趙鎭衡** 지금 2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24페이지 들어갈 차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3개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에 대하여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지난 2008년 10월 9일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던 바 야간집회 관련 조항의 정비는 현행 제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15조 적용배제조항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인원 에 의한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집회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인의 회합이라고 하는 집회의 특성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1인 시위를 포함한 소규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이나 현행법 하에서도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신고서에 제시된 참가 인원과 실제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며 소규모 인원의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그 집회의 방법 등에

따라서는 집회법에 따른 보호 또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신지호 의원 안 등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통고 없이 신고된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의한 경우 허위신고를 한 후 실제로 집회를 미개최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또는 불필요한 집회 신고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 관련 경찰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집회를 실제로 개최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단체 사이에 논란이 예상되고, 특히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의 경우 신고된 집회기간 동안 가능한 한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리어 형식적인 집회만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미개최로 인해서 경찰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단체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집회를 연이어 신고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음 폭력시위 용품의 제조·보관·운반·휴대행위까지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성운환 의원, 정갑윤 의원님, 권경석·신지호 의원님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집회현장에서 시위진압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진압 수단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크다는 점, 과거 시위에서 주로 사용된 화염병에 대하여 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사용한 자뿐만 아니라 제조·보관·운반자까지도 처벌함으로써 화염병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에 비추어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것은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화염병은 사용 방법이 화재 발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나 대나무, 각목, 쇠파이프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폭력시위와 연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러한 물

품을 제조·운반·보관하는 행위 전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과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시법에 의한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 하는 방안 외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신원 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폭력시위 203건 중에서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하였고, 특히 2008년 촛불시위 106회 중 폭력시위 발생은 52회, 복면시위 출현 44회 등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에 상관관계가 높고, 집회나 시위 참가자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한 후 과격 폭력시위를 할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과격시위자에 대한 검거가 어려워 시위가 더욱 폭력화되고 이들에 의해 과격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복면·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길 경우 과격화 경향을 불러 일으켜 불법 폭력시위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면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보장하는 것으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와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집회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 침묵시위 등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런 경우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복면시위금지로 달성될 법익과 제한될 여지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벌칙의 현실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구성요건과 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趙鎮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 위원** 전문위원, 24페이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기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야간 집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야간 집회에 대한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는 9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2008년 10월 9일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던 바, 야간 집회 관련 조항의 정비는 현행 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2008년 10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자 그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그 말입니다.

○**최인기 위원** 그것 좀 알기 쉽게 쓰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났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예, 그런 취지로 쓴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쉽게 좀 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지호 의원 비롯한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25페이지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시위용품의 제조 보관 운반 휴대행위까지도 금지하도록 하는 안, 우리 청장께서는 예를 들면 시위 때 무슨 각목 대나무 이런 것을 제조 보관 운반, 대나무나 각목을 다른데 공사판에 쓰려고 제조한 사람들까지 가서 처벌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목적범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집회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용으로 쓰려고 각목 쇠파이프 만들어 놓았는데 시위자가 가서 남의 것 가져다가 시위할 때 쓰면 그 사람은 공사용으로 만든 제조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는 것인가, 나는 정확한 법 규정이 전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하더라도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와서 읽어 보고, 청장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법안

별로 숙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제조라는 개념이 사실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준비 등의 용어가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철봉 등 폭력시위용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집회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나 목적범을 넣어서 제조 보관 운반 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인기 위원**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그러니까 시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겠다?

○**경찰청장 강희락** 예.

○**최인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委員長 趙鎭衡** 소위에서 다룰 적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나오세요,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의혹의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의혹의 부분 같은 것 다 해서 오세요.

○**최인기 위원** 우선 저는 그 두 가지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읽어보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청장님, 집회시위법이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집시법을 만든 이유.

○**경찰청장 강희락**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렇지요? 이 법은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리고 평화적 집회가 열렸을 때 그에 따른 처벌조항도 있는 것이고.

우선 미신고 집회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집회의 경우는 집회를 보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은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미신고 집회 또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집회의 경우도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청장님, 미신고 집회 보장되어야 됩니까, 보장되지 않아야 됩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미신고 집회는 보장 안 되어도……

○강기정 위원 보장해야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강기정 위원 해야지요, 보장. 평화적으로 되도록.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강희락 집회는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신고의 집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는 보장하는 것이 이 집시법이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그것이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 취지지, 그러니까 미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미신고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 그것을 보장할 것이냐 해산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그것이 보장하는 쪽이 맞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경찰청장 강희락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법률 체제상 신고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위원 무슨 신고가 원칙이에요?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집시법의 목적, 이유가 뭐냐라고 했어요. 집회는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질되거나 이랬을 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지금 평화적이고 비평화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작년 촛불집회가 약 105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여기서 불법 집회가 40여 차례 있었다 이렇게 통계가 있었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폭력 집회.

○강기정 위원 폭력 집회라고 표현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강기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신고된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였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 그 폭력 집회 외에 나머지를 해산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왜 해산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그러면 법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 당시에 그것도 미신고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산절차를 진행을……

○강기정 위원 미신고 집회지요? 미신고 평화집회였지요? 그러니까 보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냥 해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미신고 불법 집회면 왜 그것을 해산하지 않고 용인했습니까, 그때?

○경찰청장 강희락 그때 강제 해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예상되고 해서 강제 해산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이 미신고에 불법 집회인 것은 명확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 4, 5쪽 이것은 제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안입니다. 4, 5쪽에 보면 현행 5조를 삭제하자는 집회 및 시위의 원천금지조항 삭제 조항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군중집회, 대규모 군중집회는 모두가 폭력 집회입니까?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대규모 군중집회는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 5조1항을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대규모 집회라고 해서 반드시 폭력성을 띠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마이크 앞에 서 보세요.

아니, 대규모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이 써도 이런 보고서는 안 나오겠네요. 청장님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상수 의원님 안 중에 확정기 사용제한, 안상수 의원님과 성윤환 의원님이 음성기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시위를 소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음입니까? 의사 표현 아닙니까? 소음이라는 것은 매우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단어이고 집회시위는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향의하고 전달하고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표

현 수단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물론 그 표현의 자유가 가장 최상의 인권 중의 하나인 것은 압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이것이 집회시위의 음성기준이나 소음이나를 제가 묻고 있어요. 소음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집회시위의 소위 음성기준이 얼마일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방식이 이것은 소음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 말이 소음입니까? 국민의 대표로 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소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육성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성을 하더라도 제재가 안 되는데 기계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송곡을 하루에……

○**강기정 위원** (마이크를 두드리며)

아니, 이것도 기계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소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지금 안상수 의원님이 제기한 기준이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50dB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55dB이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 아시는 분 음성으로 표시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趙鎭衡** 강기정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지적을 해 놓으시면 소위에서 자세하게 하고……

○**강기정 위원** 55dB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해 보게요.

○**경찰청정보4과장 전석종** 정보4과장입니다. 55dB는 실내에서 핸드폰 소리, 1m 정도의 핸드폰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현재 집시법에는 주간에 얼마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상수 의원 개정안이 55dB이고 현행법에는 규정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정보4과장 전석종** 현행법은 야간에 60, 65dB, 주간에 70, 80dB입니다.

○**강기정 위원** 주간에는 학교 같은 데가 65dB……

○**경찰청정보4과장 전석종** 주간에는 70입니다.

○**강기정 위원** 주간예요?

○**경찰청정보4과장 전석종** 65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65 정도면 어느 정도지요? 아까 55 정도가 휴대폰 소리 1m 떨어진 소리고 65 정도는?

○**경찰청장 강희락** 기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현행 65가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높기 때문에 55로 낮추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경찰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의원님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크다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委員長 趙鎭衡**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강기정 위원** 그러면 집회시위 금지법을 만들어야지요. 입을 다물고 침묵시위만 허용하든지.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성운환 의원님, 신지호 의원님이 제출한 폭력시위용품 제조 운반 보관, 신체 해하는 물건은 어떤 것입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예시를 좀 한번 들어 보시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쇠파이프라든가 돌이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위 가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강기정 위원** 이 조항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통해서 자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스크 착용 금지 16조4항을 개정하자고 그런데 그러면 마스크 착용, 다시 묻겠는데요,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법입니까? 되도록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까? 그 취지에 비쳐 보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가지고 처벌한다, 맞지 않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마스크를 단순히 착용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면, 소위 얼굴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감기 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겠지요.

○**강기정 위원** 아니, 집회시위를 하는데 완전히 눈만 놔두고 다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왜 처벌대상이지요? 경찰이 왜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찰이 왜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찰이 왜 시위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됩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고 일단은……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신원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시위하는 사람들?

○**경찰청장 강희락** 불법행위를 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저희들이 신원확인을 해서 처벌을……

○**강기정 위원** 누가 불법행위를…… 청장님이 제가 시위하면 제 가슴 속에, 제가 불법행위를 할지 안 할지를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아닙니다.

○**강기정 위원** 미리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경찰청장 강희락** 폭력시위로 나아갔을 때 따지는 겁니다, 폭력시위로 나아갔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화적 집회는 왜 그러면…… 평화적 집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평화적 집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지요.

○**강기정 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경찰청장 강희락**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평화적 집회가 그러면 폭력집회로 전환했을 때……

○**이인기 위원** 본인 스스로가 복면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이인기 위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복면을 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 아닙니까, 시위 참가자의 자유?

○**경찰청장 강희락** 복면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복면을 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처벌할 의무가 있지요.

○**위원장 趙鎭衡**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청장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법안을 낸 것이 복면하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鎭衡** 어떤 불법 폭력시위를 한 사람이 복면을 했을 경우를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규정을,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명확하게.

○**강기정 위원**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불법 폭력시위를 하면 복면한 사람만 처벌을 합니까? 다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장난을 하십니까? 불법 폭력시위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다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왜 처벌 대상이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李恩宰 委員**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저렇게 하려면 시간제한을 두시든가……

○**委員長 趙鎭衡** 좀 계세요.

○**신지호 위원**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지금 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어서 이려고 있는 게 아니고……

○**委員長 趙鎭衡** 신지호 위원, 지금 확인할 만큼 확인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계세요.

○**신지호 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했으니, 청장께서 지금 충분히 스터디가 안 돼 있으니……

○**강기정 위원** 기다리세요,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내가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강기정 위원** 청장님한테 물으니 기다리세요, 신지호 위원님.

○**委員長 趙鎭衡** 신지호 위원 가만히 계시고요. 일단 내가 강기정 위원한테 발언권 줬으니 좀 가만히 계세요.

○**李恩宰 委員**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했으니깐요.

○**신지호 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유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아까 발언신청 했는데……

○**委員長 趙鎭衡** 권경석 위원 먼저 하시고요.

○**권경석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저는 원론적 차원에서 청장께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집회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자유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인 이상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면 그 경계가 어디냐가 문제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권경석 위원** 복면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복면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법상으로는 가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그런 가면 상태를 지금 금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법 시위로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평화적 시위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복면 아니라 가면을 하더라도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입법 내용이에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어느 시점에 처벌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권경석 위원** 그래서 청장께서는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판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살살이 뒤져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례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국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기준을 설정해서 처벌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것도 살살이 뒤져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상대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인권 침해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법안소위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기 위원** 작년 5, 6, 7월 달 경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답을 해 주십시오.

야간에, 설사 신고 내지 허가를 했다 치자, 그래서 다수인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경우에 국가에서는 평화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리라 생각하고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한 것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이인기 위원** 그런데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그 원래 집회를 허용한 뜻에 어긋나게 쇠파이프나 각목이나 염산이나 뿌린다든지 화염병을 뿌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예상을 하지 않고 집회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원래 집회를 허락하고 신고해 준 의도와 달리 그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쇠파이프, 각목, 염산을 던지고 이렇게 폭력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집회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해서 세계 뉴스에 톱픽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단순한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서 가지고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이 백주에 끌려가는 사태도 나오고 야간에 경찰관이 끌려가서, 경찰관을 끌고 가라고 집회 허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사후에 우리 수사의 한계상 누가 그러면 폭력을 썼느냐, 누가 각목을 던졌느냐, 누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느냐를 가려내려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형법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을, 복면을 써버리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처벌도 못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예고를 줘야지 그다음 집회에서 그런 불법 폭력이 안 나오는데 경찰 수사업무상 그걸 못 가려내니까 또 폭력, 폭행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집회하는 가운데서 다중에 묻혀서, 어둠을 틈타서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감추고 폭력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못 하게 막자, 그 방법이 뭐냐? 당당하게 얼굴을 내놓고 집회를 해라 이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자기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리라는 전제가 되는 것 같으면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래서 이 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김유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김유정 위원!

○김유정 위원 신지호 위원 먼저 하시지요. 먼저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신지호 위원 먼저 하시지요.

○신지호 위원 오늘 제가 청장님 이것 답변하시는 것 보고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스러운데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안 돼 계십니다. 지난번에 어청수 청장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는 개념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주 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명확히 정리를 할 테니까 경찰청 간부들도 꼼꼼히 들어서서 앞으로 명확한 원칙, 지침을 세우는 데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평화집회’라는 말이 엄청난 혼선을 갖고 오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집회·시위에 있어서 비록 미신고 집회였지만 평화집회 아니었느냐?’ ‘그런 걸 왜 단속하려고 그러느냐?’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구조인데 평화집회라는 말은 정치인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경찰들은 쓰지 마십시오. 경찰들에게는 합법집회나, 불법집회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합법집회나 불법집회나만이 있는 것이고 이 평화집회처럼 정치인들이 써야 될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제발 경찰들은.

경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집회처럼 애매모호한 말은 쓰지 마시고 적법한 집회나, 합법한 집회나, 또는 불법집회나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집회도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분명히 나누십시오.

첫 번째는 비록 야간, 옥외, 법적으로 불가능한, 따라서 미신고 집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지만 그야말로 어떤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 예를 들면 청계광장 집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계광장 내에서만 조용하게, 그러니까 거기서만 이루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집회, 그런 집회는 어떤 도로점거라든가 하는 질서 파괴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고 폭력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작년에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이런 유형의 집회들이 초기단계였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록 불법집회지만 경찰이 강제해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 비록 불법 집회였지만 도로점거라는 질서 파괴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고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불법집회지만 경찰이 사실상 용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도로점거를 한다든가 하는 질서 파괴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비록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 던지고 염산 뿌리고 하는 이런 폭력행위는 없었다지만 광화문 십 몇 차선 도로에, 그런 걸 점거해서 교통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는 이 경우도 아까 얘기한 평화집회, ‘폭력 안 일어났으니까 그것 평화집회 아니냐?’ ‘그럼 가만 내버려 두고 보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

그래서 평화집회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불법집회지만 첫 번째의 청계광장에서만 하고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도로점거, 공공질서 파괴 행위까지 일어난 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폭력행위가 두 번째 단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실상 용인을 했다고요. 두 번째 질서 파괴 행위, 세 번째 유형 폭력행위……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를 폭력의 자유하고 자꾸만 이렇게 혼동을 해서 안 되고 폭력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는 야만사회입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기정 위원 나가버리셨는데, 그런데 복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봤다면 ‘마스크만 써도 잡아 갈래?’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폭력 예비행위로서 복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세요. 폭력 예비행위로서의 복면 착용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제가 아까……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조금 요지로만 말씀해 주시고……

○**신지호 위원** 예,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법안소위에서 이 법에 대한 심사 과정에 들어가지만요, 주무 부서인 경찰이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했습니다.

김유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유정 위원** 김유정입니다.

소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제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면 착용 금지와 관련해서요,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법을 어길 목적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법을 어길 목적이 반드시 있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김유정 위원** 그렇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폭력 예비행위로서 복면을 할 거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그건 그렇습니다.

○**김유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성격이 매우 애매할 수 있고요, 또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무관하게 본인의 직업이나 또는 직장의 견해와 대립되는 어떤 집회에 참여해야만 하고 참여하고 싶을 경우에 참가자 개인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분 노출을 꺼릴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착용하는 마스크나 복면의 경우에도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아닙니다, 그것은 단서규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신지호 위원** 안 된다고 제 법안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제발 법안 좀 읽어 보고 얘기하세요.

○**김유정 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항상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의를 좀 지켜주시겠어요?

○**委員長 趙鎭衡** 그럼요.

아니,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가 잘못된 부분은 소위에서 다룰 적에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같이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발언권 주어서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는 위원님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발언하세요.

○**김유정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지호 위원** 법안이나 제대로 읽어 보고 얘기를 해야지……

○**김유정 위원** ……

○**委員長 趙鎭衡** 발언하세요, 김유정 위원.

○**김유정 위원** 얼굴을 숨기는 행위네요 복면이

나 가면, 목도리, 모자, 후드 등을 사용해서 이게 한 가지 의미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한다는 그런 개정안은, '신원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복면을 착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면을 착용한 자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서 위험성이 전혀 없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그것을 착용하는……

○**김유정 위원** 그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쇠파이프나 각목 제조·운반 이 경우에도 폭력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제조·운반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런데 그게 폭력 시위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 나무 지주목 같은 걸 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정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지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험물질 제조·운반 이 경우에도 현재 집시법은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지 그 사용 목적을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서 간단하게 파악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과잉한 입법이라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저는 명시되어

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과 근거조항들을 좀 준비하셔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甲潤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鄭甲潤 委員** 특히 집시법 관련해서는 벌써 수차례 상정하려고 하다가 무산되고 이제 오늘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게 됐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을 의결해 놓고 끝장토론을 보는 게 그게 아마 법안소위에 가서도 더 효율적인 심의가 안 되겠느냐, 법안소위윈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여러 위원님, 오늘 죽 대체토론한 법안들 전부 다 아직 의결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집시법도 조금 더 대체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단 여기서 대체토론을 극렬하게 시간을 더 많이 끌고 많이 한다고 해서 소위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고 소위에서 결국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갑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청원심사소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3시부터 청원심사 회의를 열기로 했었기 때문에 급하신 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의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은 계속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恩宰 委員** 좋습니다.

○**강기정 위원** 토론을 마저 하시지요. 앞의 부분까지는 또 의결하실 필요가 있다면 하시고, 토론 하던 것은 계속 대체토론 진행하시자고요.

○**鄭甲潤 委員** 의결해 놓고 하시지요.

○**李恩宰 委員** 그렇지요. 의결을 하고 더, 왜냐 하면 정족수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委員長 趙鎭衡** 그러면 집시법은 계속 더 토론하기로 하고 집시법 이전까지 먼저 의결을 하고, 대체토론 하고……

○**신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 운영에 굉장

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실 텐데, 오늘 행안위 행정실 관계자들의 대단한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의사 진행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이고 하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세요. 집시법은 지난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단 대체토론 과정만이 없었던 거고요. 나머지 40여 개 법안들은 오늘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온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오늘 집시법을 법안 상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의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대리로 사회를 보시던 권경석 위원님이 몇 차례, 수차례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회의 순서, 그래도 제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무난히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것만 먼저 그럼 상정을 시키고 이걸 놔두자? 이걸 두 번이나 잘못된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건 다 합의가 될 적의 얘기를 한 거였고, 지금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럼 집시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저도……

○**委員長 趙鎭衡** 최인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최인기입니다.

우선 경찰청장, 지금 청장의 입장은, 이 법안들이 정부 법안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라고 의원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정부 법안이 아닌데 ‘그 법안 내용이 무엇이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정부 제출 법률 같은 정부 입장을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은 의원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묻는 것이지 청장이 이 법안 내용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걸 알고 답을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이 법안 37조입니다, 헌법 37조.

그러면 집회의 자유, 어떤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나,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집회행위 자체가 허락하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결국은 적법하지 못한 집회·시위가, 불법적인 집회·시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 같은 생각이신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쇠파이프, 각목 가진 행위 마찬가지로, 지금 법안 제안을 하신 의원님들 법안 내용도 보면 ‘주최자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등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예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의 목적·일시·장소가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집회 참여한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법을 다 지키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가면이나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에 관해서 제한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데, 허용된 장소에서, 야간이 아닌 낮에, 또 신고된 집회에 참여하는데 마스크 쓰고 가서 집회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 그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본질에 관한 제한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청장 답변할 필요가 없고 제 얘기를 참고해서 나중에, 제가 지금 예산소위로 갔기 때문에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법안을 좀 다뤄야,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국민들이 법안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아직 6시도 안 되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복잡하고 또 중복된 회의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3월 달에도 못 하고 4월 달 오늘 처음 법안 상정하고 있습니다. 4월도 오늘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상정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소위에 넘겨질 수 있게, 그래서 법안심사소위도 내일도 하고 계속 해서 좀 국민한테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우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대체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 법안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정부 측에다가 정부가 낸 법안도 아니고 의원 발의로 낸 건데 의견을 들으시는 건 좋지만 정부에 꼭 추궁 쪽으로 자꾸 하시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많이 해 주시고 법안소위에서 다룰 적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내고 뭐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는 그때 추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아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委員長 趙鎭衡** 의사진행발언이요?

신지호 위원.

○**신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 제출안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제출안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차피 이게 열띤 토론이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1인당 발언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닌데도, 반드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워낙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저기도 충분히 안 되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그 법안에서 뭐 하고자 하는 거냐, 그것을 확인하려면 법안 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쉽게 쉽게 확인되고 끝나는 것을 굳이 발의하지도 않은 경찰청장이 그걸 꼭 답변하게끔 만드는 이것은, 정부 발의가 있고 의원 발의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발의가 있다면 그런 분류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따라서 그러한 무슨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의한 사람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두 가지 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존경하는 신지호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위원장이 지금 적절하게, 발언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조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관장의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조정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점 참고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李恩宰 委員**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정배 의원이 낸 안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문위원회가 집회·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횡수를 자문위원회를 열었는지 그것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趙鎭衡**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제기만 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趙鎭衡** 문제 제기만 해 주세요.

○**李恩宰 委員** 아무튼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 법안소위 할 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 복면에 관한 내용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과연 복면을 하는 것이 정당당당했다 그러면 복면을 했는지 역으로 제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용산 사태에서 마스크를 써서 또는 복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일

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지난번 영등포경찰서 사건 때 경찰관의 지갑을 뺏고 그다음에 경찰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끌고 다니고 이랬을 때 이때도 역시 복면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아서 이것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장단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강창일 의원이 내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집회 및 시위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한다든지, 예들 들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시청 앞의 광장에서 한 사람이 시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다 신고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법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에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타당한 법안인지 이런 것 등등을 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예, 알겠습니다.

○李恩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다음, 이법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률 위원 청장님께…… 청장님, 수사국장도 하셨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이법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어 봅니다.

시위 현장에서 복면이나 또는 옛날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또 이번에 용산 시위에 복면 쓴 사람들을 조사해서 실제 체포해 가지고 조사한 적 있으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과거에 현장에서 검거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채증을 해서 나중에 판독을 해서 그 사람의 옷차림새라든지……

○이법률 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복면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까? 얼굴에 화상이 있어서 그걸 숨기려고 한다든지 특별한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수사 당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마스크나 복면 안 쓰고 그냥 시위에 참가를 했는데 특별하게 복면 쓰고 또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그건 당연히 물어보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아닌데 하지만 ‘왜 복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했느냐?’ ‘왜 또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가했느냐?’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그때 대답이 뭐던가요?

○경찰청장 강희락 제가 구체적으로 취조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신원 확인을 좀 어렵게 할 목적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법률 위원 제가 그 짐작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느냐라고 여쭙어 본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조사한 사람들의 결재를 했거나 그 조서를 보신 분들 계시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이법률 위원께서도 그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법률 위원 제가 이걸 법안심사소위에서 참고를 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委員長 趙鎭衡 지금 확실한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철저히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법률 위원 없습니까?

○委員長 趙鎭衡 경찰청에서요 실질적 통계나 이런 자료까지 다 뽑아 가지고 나오세요.

○이법률 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한 것에 대한 통계를 그러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복면을 쓰고 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시위에 참가를 하는지.

○委員長 趙鎭衡 다음, 강기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정 위원 청장님,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한 복면 금지, 그 법 조항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면 봐 주시렵니까, 법 개정안?

○경찰청장 강희락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것이 13조지요? 13조5항……

지금부터 제가 그 조항만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정부 답변을 보더라도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왜곡하고 있느냐? 자, 읽어 보겠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원확인을 어렵

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하나는 놔두고.

자, 제가 읽었는데 어디에 거기가 평화적 집회에서는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데는 단속하겠다, 이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것 질문이고…… 답변 좀 해 보세요, 혹시 보셨으면. 없지요, 그것? 지금 평화다, 폭력이다, 신고다 미신고다…… 이 모든 것 집회에서 지금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어떠세요? 한번 답변을 좀……

○**委員長 趙鎭衡** 그 부분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강기정 위원** 아니, 답변을 해 보시라고.

왜 자꾸 평화적인 집회에서는 복면 써도 용인할 거며 폭력적인 것은 안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냐고요, 아까.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기정 위원** 아이, 좀 가만있어 보세요,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이런 식으로 회의가, 이게 정상적인 회의가…… 제가 답변을 하게……

○**강기정 위원** 신 위원님! 신 위원! 조용히 좀 해 봐요!

○**委員長 趙鎭衡** 아, 좀 계세요.

○**강기정 위원** 이성을 좀 차리세요, 신 위원님, 이성을!

○**李恩宰 委員** 아니, 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지호 위원** 강 위원부터 좀 이성을 찾으세요.

○**李恩宰 委員** 강 위원님, 이성을 찾으세요. 찾으실 분은 강 위원님이세요.

그렇게 어떻게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도대체?

○**강기정 위원** 또 시비 걸어서 판을 또 깨시려고 그러는구먼, 또.

○**李恩宰 委員** 뭐요?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건 게, 누구데 먼저?

○**강기정 위원** 아니, 정당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재 위원님?

○**李恩宰 委員** 아니요, 불리하면 시비 건대, 불리하면.

○**강기정 위원** 이은재 위원님!

○**委員長 趙鎭衡** 이은재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좀.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어요.

○**강기정 위원**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고 있어요!

○**李恩宰 委員** 알고 있어요. 왜 그래, 왜.

○**강기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청장이 “평화적인 집회는 복면 써도 괜찮고 평화적이지 않은 집회는 가면을 착용을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어디에서 그 답변의 근거가 있느냐라고 여쭙어 본 겁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단서조항 2호에 보시면……

○**강기정 위원** 단서조항 보시겠습니까.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면.

1.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규모·일시 및 장소를 고려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장 강희락** 이때가 평화적인 거에 해당된다고……

○**강기정 위원** 어디가 ‘평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력’ 이런 단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이것을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석을 하시냐고?

○**경찰청장 강희락** 아니, 지금 집회의 규모나 목적이나 장소, 그걸 다 고려해서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이것을 ‘평화적으로’ 저희들은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법 해석하시는가요? 아니, 법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자, 앞서 읽었던 데 정확하게…… 복면도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이러할 때는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복면을 착용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낮은 경우는 뭐고 높은 경우는 뭐지요? 뭐예요?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경찰청장 강희락** 통상적으로 평화적이면 공공 질서를 해할 위험이……
- 강기정 위원** 어디가 ‘평화적이면’이에요?
- 경찰청장 강희락** ‘평화적’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 委員長 趙鎭衡** 강기정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의 차이도 각각이 다릅니다.
- 강기정 위원** 아니, 답변을 왜곡하고 있어요. 답변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 委員長 趙鎭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 강기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경우라고요, 이 경우는. 있지 않는 폭력집회는 마스크를 쓰면 안 되고 어떤 집회는 써도 된다는 해석이 어디에 있는데 그렇게 현혹시키냐고요.
-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18조를 한번 봐 보세요. 방금 13조는 집회·시위의 주최자이고 18조는 참가자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가자도 18조2항에 보면 앞서 주최자에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만 명이 되면 그 참가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이런 위험적인 법률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 경찰청장 강희락** 그것은 뭐 제안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폭력적인 집회는 써서는 안 되고 처벌받고, 평화적인 집회는 처벌 안 받는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해석이 있냐고요, 그것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 그것에 대한 발언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
- 저는 지금 법조문을 읽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 경찰청장 강희락** 지금 ‘평화’라는 용어를 안

썼다 뿐이지 여기에 지금……

- 강기정 위원** 다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 지금 신지호 의원님의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모두는 단서조항 1, 2 외에는 다 처벌받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경찰청장 강희락** 그렇습니다.
- 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1중의…… 1과 2가 해석 여지가 아까 ‘폭력적이다, 평화적이다.’ 이런 아니지요? 그 해석은 아니지요?
- 경찰청장 강희락** ……
- 강기정 위원** 폭력적이면, 폭력적 시위나 집회일 경우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모두를 처벌한다니까요. 그 집회는 그리고 불법 집회이고 그러잖아요. 처벌 대상 아닙니까, 무조건?
- 하나 안 하나 한 말을 왜 거기에다가 합니까? 불법 집회에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신고된 정상적인 집회일 때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면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석이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에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건 논할 가치가 없다가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건 당연히 처벌받는 거지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러면 마스크 벗으면 폭력 집회에 참가하는 주최자는 처벌 안 받으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꼼꼼이 생각해 보시고요.
- 한 가지 더…… 지금 소음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하신 것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 보니까 이랬네요. 아까 65라 그랬습니까? 현행법이 주간에 55, 60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60인 경우가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 내의 소음, 그럴 때 인체반응이 수면장에 시작,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0일 때의 소음 크기가.
- 그래서 이것 우리 법안소위 할 때 다루어야 되니까…… 최근 집회에 신고되는, 서울시로 해도 좋고 정부로도 좋고. 최근 1년치 집회 신고서, 1년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그 규모를 모르는데…… 아무튼 다량의 건수, 1년치도 좋고 3년치도 좋습니다. 적당한 양에 대한 집회신고 장

소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할 때 어디 주택지에서 하는 것 아닐 것 같아요, 틀림없이. 실내는 빼고, 실내는 집회신고에 해당이 안 되고, 종교시설 안 되고. 그러면 이 집회를 보통 큰 도로가나 큰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 것이 틀림없는데 60dB 정도면 수면장애 시작이에요. 그러면 뭣이 어째서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서 이 집회 dB을 올려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 보기 위해서 법안소위 하실 때 집회신고 장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좀 다른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趙鎭衡** 신지호 위원 말씀하세요.

○**신지호 위원**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고 그런데요.

○**委員長 趙鎭衡** 법안 대표발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신지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가 52회 발생을 했습니다. 그 52회 폭력시위 발생 중에서 복면시위대가 출현한 것이 44회, 약 85%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시위와 복면 착용과의 연관성이 작년 광우병 촛불 때 한 8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그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국감 때 제가 경찰청 국감을 갔을 때 당시의 어청수 청장한테 확인을 건데, 그렇다면 이 폭력을 휘두른 복면시위자들을 작년 광우병 100여 일에 걸친 과정에서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느냐? ‘단 한 건도 없다.’ 그 당시에 어청수 청장 답이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잡았나? ‘채증, 사후추적을 통해서 잡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 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불법 폭력 집회하면 꼭 복면을 썼든 안 썼든 다 잡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집결을 하는 시위에서 그게 불법 폭력 집회라고 해서 1만 명을 다 잡아가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폭력 행사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잡은

건이 단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죽어나는 행위 패턴을 보아하니 반드시 폭력을 휘두르기 전에 얼굴을 다 가리더라,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예비행위로서 얼굴을 다 가린 거지요.

그런데 이 법 조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이 법 조항이 있으면 폭력을 휘두를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없으면 차단할 길이 없어요.

작년에 어땀는가? 해산 명령을 내리고 경고방송을 한 두어 차례 합니다. 두어 차례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다.’ 그래 놓으니, 이 사람들은 끈들이거든요. 이 복면조들은 끈들…… 도망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현장 검거가 1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고 없고가 폭력을 예방하고 안 하고 하는 데 어떠한 현실적실효성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도 없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폭력을 찬성하는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鎭衡** 강기정 위원님.

하시고서 이제 매듭지으시지요.

○**강기정 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에 나와 있듯이 2003년 현재 결정에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고 집회 시에 참석자의 의사표현과 복장의…… 또 여기 구체적으로 복장, 참가의 형태 등등은 다 권리다, 이렇게 분명히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이 추세는 이걸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관료적 발상이고 과거 발상이다, 왜 우리 시대는 앞서가는데 뒤로 퇴행하냐. 왜 장발 단속을 안 합니까? 미니스커트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좀 해야지요. 그 법도 정부 입법으로 좀 내 보시지요. 통행금지도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잘할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폭력집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찬성이예요. 왜 야간집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부 또는 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야간집회, 마트 같은 데도 야간시장 24시간 다 하잖아요? 왜 다른 여러 기업이나 이런 것은 시대

의 추세에 따라가는데 이 경찰은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경찰청은, 정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 많이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김충조 위원** 저도 좀 한마디……

○**委員長 趙鎭衡**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 저는 이제 대체토론 종결하고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충조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원칙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공공질서 사회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서로 의견 교환 내지 심의를 통해서 거리를 좁히고 통합된 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판단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자료 요구를 제가 했어요. 지금 강기정 위원님이나 김유정 위원님이나 또 최인기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조문에 반영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심의를 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부 측이 갖고 있는 온갖 자료 살살이 뒤져 가지고 제시하라는 말씀을 그런 취지에서 했어요.

오늘 경찰청장 답변하는 것 죽 들어 보니까 경찰청장이 발의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법조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발의할 때 입법 취지가 뭔지 내용을 알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적정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답변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 이런 게 게재된 답변을 하면 혼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경찰 쪽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살이 자료를 뒤져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가지고 법안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왔으니까 김충조 위원님 의견 제시한 다음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했습니다.

김충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충조 위원** 오늘 대체토론 과정을 제가 지켜 보면서 모처럼 모범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대표발의 한 의원들도 열 분이나 되고, 오늘 여기도 문자 그대로 소위에 넘기기 전에 대체토론을 경유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지적한 바처럼 지난번에 이미 의결은 됐다 이거예요.

○**신지호 위원** 상정……

○**김충조 위원** 상정 의결이 되었고, 아직 소위 회부는 안 되었지요?

○**신지호 위원** 대체토론이 안 되어서 소위 회부가 안 되었습니다.

○**김충조 위원**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대체토론을 경유해서 소위로 회부한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글썽요 하기 나름이지만 오늘처럼 발언한 위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사전에 거른다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사법시험 합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그리고 이 경찰청 내에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그분들이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경찰청장 강희락** 거기도 지금 과장은 사시 출

신자로 보해 냈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래요?

○**경찰청장 강희락** 예.

○**김충조 위원** 그러면 이 관련 법규에 대한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나와야 될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긍정적이다 할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완곡하고 우회적인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지금 ‘마스크 내지는 가면, 이것이 합당하나 아니냐’ 이 문제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일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권경석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아까 강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000년, 2003년도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참고가 되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인 한 이것은 어느 경제적·사회적 이익보다는 우선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예, 동의합니다.

○**김충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법안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한 것 중에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서 ‘어떤 사안을 규제할 때 그것이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의 원칙 또 과잉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다 있습니다. 법익교량의 원칙, 집회 및 시위를 규제를 해서 얻는 이익하고 또 그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잃게 되는 표현의 자유의 법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교량하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하는 아주 우선적인 가치이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질적인 바탕으로 생각할 때 여기 자명하게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이 법안이 아주 훌륭한 옥동자로서 창출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000년, 2003년 현재에서 결정한 사항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은 내일 자료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여야 간의 위원들 문제가 아니고 모범적인 시위 문화, 집회 문화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 입안, 정책의 실현 그리고 정치적 방향의 설정, 이 모든 분야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수집단의 의견들이 거기에 반영됨으로써 많은 폭의 국민 참여의 정치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참다운 국민총화는 확보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강희락** 동의합니다.

○**김충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저로 해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내일 청장께서 법안심사소위에 안 나오시면 관련 법무담당인으로 하여금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문의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서 내일 훌륭한 법안이 창출됨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강희락**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충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했지만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趙鎭衡** 예, 말씀하십시오.

○**김충조 위원** 제가 행안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3시에 청원심사를 한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시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천만 번 옳습니다. 밤을 새워서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있으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참고로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또 이것이 권경석 여당 간사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鎭衡** 수고했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현업에서 한 1년여 간 떠나 계셨기 때문에 오랜 경륜과 경험으로 잘 아시는 데도 자신 있게 빨리 빨리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계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답변을 하는 자세를 가지신 것은 오히려 잘 하신 것 같고.

여하튼 오늘 여기에서 여야 간에 대변해야 될 그쪽 부분을 충분히 대변하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또는 사

레나 판례나 이런 것을 대응을 잘해 주셔야 법안 심사소위에서도 원만하게, 김충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동자를 만들어 낼 수가 있지, 이것 어디까지나 시위 문화를 정말 잘 보호도 해 주면서 또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적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충정의 국민의 소리거든요.

그런 점 대응을 잘해 달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5항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총 44건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이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기정	권경석	김소남	김유정
김충조	김태원	김희철	신지호
원유철	유정현	이명수	이범래
이은재	이인기	장제원	정갑윤
조진형	최인기		

○청가 위원(1인)

이용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정부측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	관	이	달	곤
제 2 차 관		강	병	규
지방재정세제국장		정	현	울
지방세제관		오	동	호
소방방재청장		최	성	룡
경찰청				
청	장	강	희	락
경무기획국장		김	윤	환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용삼	홍재형	민주당	2009.4.15

○의안 회부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9. 4. 10 김소남·고승덕·권선택·임두성·김옥이·원희목·안홍준·손숙미·유정현·이해봉 의원 발의)

4월 13일 회부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황진하·손범규·조진래·김옥이·김영우·정의화·김무성·문학진·김성식·이정선·허천·김성수·유정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우윤근·강창일·이윤석·강기정·김영록·송민순·우제창·주승용·이춘석·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4일 회부됨